



11-1371000-0005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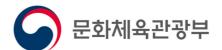
ISSN 번호: 2287-8963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2020년 조사 실시)

2021.01





### **CONTENTS**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요약	1
1. 사업체 수	2
2. 매출액	2
3. 종사자 수	3
4. 지역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3
제1장 2019년 기준 조사개요	5
1. 2019년 기준 조사 방향	6
2. 2019년 기준 조사 목적	7
3. 2019년 기준 조사 특징	8
4. 조사내용 및 방법 /	13
4.1 조사설계	13
4.2 조사대상	13
4.3 조사단위	14
4.4 조사절차	15
4.5 조사모집단	16
4.6 표본규모	19
4.7 시장규모 추정	22
4.8 조사의 한계 및 유용성 :	24

제2장 스포츠산업체 일반현황	27
1. 사업체 수	28
1.1 모집단 사업체	28
1.2 설립연도	30
1.3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31
1.4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32
1.5 산업분류별 사업체 수	33
1.6 지역별 사업체 수	33
제3장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35
1. 총 괄	36
1.1 2019년 기준 조사 스포츠산업 요약	36
2. 매출액	37
2.1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	37
2.2 조직형태별 매출액 현황	40
2.3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41
2.4 지역별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	42
2.5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	43

### **CONTENTS**

3. 종사자 수	44
3.1 사업종류별 종사자 현황	44
3.2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현황	47
3.3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현황	48
3.4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현황	49
3.5 지역별 사업종류별 종사자 수 현황	50
4. 사업실적	51
4.1 스포츠산업 전체 실적	51
4.2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53
4.3 사업종류별 영업실적	54
4.4 지역별 영업실적	55
5. 인력충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56
5.1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현황	56
5.2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57
6. 특성항목	58
6.1 스포츠 용품업 내수 및 수입액 현황	58
6.2 스포츠 시설업 연간 영업 개월 및 이용인원	59
6.3 스포츠 서비스업 고객(소비자) 연령별 매출액 구성비	60
7. 스포츠산업 현안 조사 결과	61
7.1 전체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분석	61
8. 성과 및 제언	69
8.1 성과	69
8.2 제언	70

부록 1	73
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74
2.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76
3. 스포츠산업 관련 용어 정의	90
4. 조사표와 결산서의 관계	94
부록 2.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통계표	97
부록 3. 스포츠산업조사 조사표 ·································	121

### ■ ■ ■ 이용자 도움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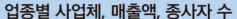
- 1. 본 조사 자료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스포츠산업 조사(정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3021호) 결과를 종합 집계, 분석한 결과이며, 조사주기는 1년임
- 2. 스포츠산업은 2007.4.6 개정(법률 8333호)된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되지만 그 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특수분류로 분류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를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함
- 3. 2012년 기준 조사 부터는 20개 세분류(65개 세세분류)로 새로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3」(이하 신분류)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2018년 기준 조사는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3」체계의 일부 개편을 통해 66개 세세분류로 특수분류 업종이 세분화 됨
- 4. 2019년 기준 조사 시 과거 수행 조사에 이어 스포츠산업 해당 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모집단 정비 조사를 실시함
- 5. 2016년 기준 조사부터는 지역별(17개 시도) 공표를 위해 시범조사 성격으로 표본수를 확대 (7,000부 이상→12,000부 이상)하고 17개 시도별 3개 대분류별 주요항목을 공표함 2017년 기준 조사부터 지역별(17개 시도) 결과를 정식으로 공표
- 6. 산업조사 결과 중 업체수, 매출액, 종사자 수, 영업비용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수치임을 이용에 참고하기 바람
- 7. 조사항목별 집계과정에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이로 인하여 하위분류의 합계가 상위분류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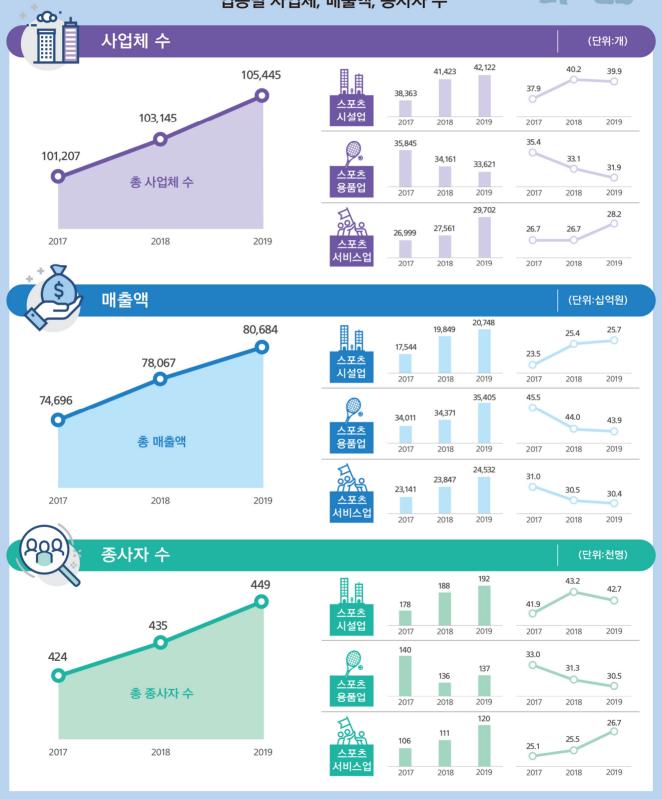
### ■ ■ ■ 이용자 도움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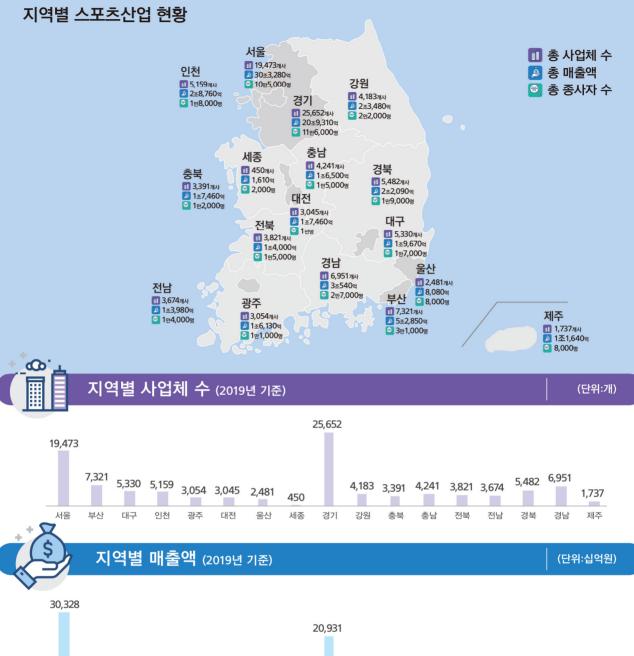
- 8. 본 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집계하였으나 기업회계 기준에서 업종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 업종별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므로 실제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9. 해당 자료가 없거나 미상일 경우는 [-]을 표시함
- 10.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문화체육관광부)」 ○ 페이지에서 전재 또는 역재"라고 기재하여야 함
- 11. 본 보고서에 실린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21)에 문의바람. 조사결과 및 분석내용은 문화셈터(문화통계포털, http://stat.mcst.go.kr) 및 KOSIS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도 볼 수 있음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 스포츠산업 현황











# 光 然 为 为 外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 조사

결과 요약

### 1 사업체 수

-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105,445개로 전년 대비 2,300개(2.2%) 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대분류 기준 용품업은 540개 감소(1.6%) 스포츠 서비스업 사업체는 전년 대비 2,414개(7.8%) 증가함
- ◆ 업종별 비중은 스포츠 시설업 39.9%, 스포츠 용품업 31.9%, 스포츠 서비스업 28.2% 순임

### [표-1] '17~'19년 업종별 사업체 수(대분류 기준)

(단위: 개, %)

	2017년		2018년		201	증감률	
구 분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2018년 대비)
스포츠 시설업	38,363	37.9	41,423	40.2	42,122	39.9	1.7
스포츠 용품업	35,845	35.4	34,161	33.1	33,621	31.9	-1.6
스포츠 서비스업	26,999	26.7	27,561	26.7	29,702	28.2	7.8
합 계	101,207	100.0	103,145	100.0	105,445	100.0	2.2

### 2 매출액

- ◆ 2019년 기준 매출액은 80조 6,8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1) 증가함
- ◆ 업종별로는 스포츠 시설업이 20조 7.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함
-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스포츠 용품업이 전체의 43.9%로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스포츠 서비스업 30.4%, 스포츠 시설업 25.7%의 순으로 나타남

### [표-2] '17~'19년 업종별 사업체 수(대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률
	구 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2018년 대비)
<u> </u>	스포츠 시설업	17,544	23.5	19,849	25.4	20,748	25.7	4.5
<u> </u>	스포츠 용품업	34,011	45.5	34,371	44.0	35,405	43.9	3.0
스포츠 서비	체육진흥 투표권 포함	23,141	31.0	23,847	30.5	24,532	30.4	2.9
스업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19,190	_	19,383	_	19,428	_	0.2
충나게	체육진흥 투표권 포함	74,696	100.0	78,067	100.0	80,684	100.0	3.4
합 계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70,745	-	73,603	_	75,581	-	2.7

<sup>1) &#</sup>x27;체육진흥 투표권'의 매출액을 반영후 산출 시 증감율

### 3 종사자 수

- ◆ 스포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44만 9천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
-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전년 대비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고, 스포츠 서비스업에서 8.2%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비중은 스포츠 시설업에 19만 2천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42.7%를 차지하였고 스포츠 용품업 30.5%, 스포츠 서비스업 26.7% 순으로 나타남

### [표-3] '17~'19년 업종별 종사자 수(대분류 기준)

(단위 : 천명 %)

	201	2017년		2018년		2019년	
구 분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2018년 대비)
스포츠 시설업	178	41.9	188	43.2	192	42.7	2.0
스포츠 용품업	140	33.0	136	31.3	137	30.5	0.8
스포츠 서비스업	106	25.1	111	25.5	120	26.7	8.2
합 계	424	100.0	435	100.0	449	100.0	3.3

### 4 지역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 ◆ 2019년 기준 지역별 사업체 수는 경기도가 25,652개로 가장 많고, 서울 19,473개, 부산이 7,321개 순임
- 스포츠 시설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 규모는 경기도가 가장 큰 반면, 스포츠 용품업 및 서비스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표-4] 지역별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단위: 개, 십억원, 백명)

	사업체 수		매출액(십억원)		종사자 수(백명)			
구분	(개)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19,473	2,567	15,640	12,121 (7,017)	324	377	351	
부산광역시	7,321	1,289	3,003	994	100	138	73	
대구광역시	5,330	555	993	419	63	70	40	

<sup>※</sup> 괄호( )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 [표-4] 지역별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계속)

	UOTI 스		매출액(십억원)			종사자 수(백명)	
구분	구분 사업체 수 (개) (개)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
인천광역시	5,159	702	1,536	638	70	62	43
광주광역시	3,054	290	782	541	55	25	31
대전광역시	3,045	383	834	530	41	34	29
울산광역시	2,481	325	309	174	36	25	21
세종특별자치시	450	97	32	33	8	2	6
경기도	25,652	6,751	7,249	6,931	515	283	359
강원도	4,183	1,785	395	168	150	41	28
충청북도	3,391	887	625	233	59	31	26
충청남도	4,241	556	539	554	75	40	33
전라북도	3,821	502	668	231	79	43	27
전라남도	3,674	724	499	175	72	46	26
경상북도	5,482	1,233	712	264	103	51	34
경상남도	6,951	1,277	1,415	362	122	89	56
제주특별자치도	1,737	827	173	165	44	14	19
합 계	105,445	20,748	35,405	24,532 (19,428)	1,918	1,371	1,201

<sup>※</sup> 괄호( )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 제 1 장

## 2019년 기준 조사개요

- 1. 2019년 기준 조사 방향
- 2. 2019년 기준 조사 목적
- 3. 2019년 기준 조사 특징
- 4. 조사내용 및 방법

### 1 2019년 기준 조사 방향

- ◆ 스포츠산업조사는 2019년 기준 조사까지 12회가 진행된 사업이며, 국가승인 통계로서 2009년 기준 조사부터 10회째 실시된 사업임
- 2008년 기준 조사까지의 스포츠산업 통계는 정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공식적으로 조사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의사결정의 실용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산출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 따라서 스포츠산업 전체의 정확한 모집단을 기초로 산출되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2010년)받고 2019년 기준 조사 기준 10번째로 사업을 진행함
- ◆ 2019년 기준 조사에서는 2019년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를 적용하여 총 66개 세세분류로 진행함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적용 유지)
- 2011년 기준 조사까지는 스포츠산업을 총 4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2」적용)
- 2017년 기준 조사까지는 스포츠산업을 총 6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적용)
- ◆ 2017년 기준 조사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17개 시도별) 공표를 위하여 표본수를 확대하고, 17개 시도별 3개 대분류별 주요항목 자료를 공표함
- 2016년 기준 조사에서 시행된 지역별 결과는 시범조사 성격을 띠고 있음
- ◆ 2019년 기준 조사에서는 연도별, 부문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구축 틀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년 조사와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스포츠산업의 대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함
- ◆ 2019년 기준 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존 표본 추출틀을 재정비함으로써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함
- ◆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공식적인 지표 활용을 위해 국가승인지정통계를 유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사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조사를 진행함
- 기업경영 정보 공시 사이트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 기관 담당자 제공 자료 등과 비교 검토를 통해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검증을 실시함

### 2 2019년 기준 조사 목적

####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적용을 통한 국가승인통계 유지

• 기존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정책의사결정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었지만, 2009년 기준 조사부터 2019년 기준 조사까지 국민에게 스포츠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등을 알리기 위한 공표를 목적으로 두고 진행함

### ◆ 최신 모집단 확보를 위한 모집단 정비

- 모집단 파악은 통계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2019년 기준 조사에서는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의 사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표본추출 틀로 활용하여 최신 모집단 확보에 주력함
-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인 이상 사업체 및 정비 필요 업종(4개)에 대한 정비조사를 진행하여 모집단 자료로 활용함
- 일부 업체의 경우 스포츠 분야 사업 영위 비율이 미미한 업체가 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스포츠산업의 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2017년 기준 조사에 이어 스포츠분야 사업 영위 비율이 10%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정의하고 모집단을 구성함
  - ※ 단 특수한 경우 스포츠산업 매출이 10% 미만이나 해당 사업체의 스포츠산업 매출 비중이 큰 업체는 매출 비중 10% 미만의 경우도 모집단에 포함(여행업 및 게임관련 업종)

#### ◆ 지역별 공표를 위한 표본수 확대

• 지역별(17개 시도별) 스포츠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2015년 기준) 7,000표본 이상에서 2017년 기준 조사부터 12,000표본으로 표본수를 확대하고 지역변수를 고려하여 표본설계 진행함

#### ◆ 총량개념의 통계를 통한 스포츠산업 전반의 실태 및 동향 파악

- 스포츠산업 시장의 전체규모 뿐만 아니라 종사자 규모, 인력채용 현황, 영업손익 등 총량개념의 통합적인 자료 산출을 목적으로 진행함
- 스포츠산업 시장의 사업체 경기전망, 인력채용 현황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스포츠 서비스업의 경우 연간이용객 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함
- ◆ 스포츠산업 시장의 실태 및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의 공식적인 지표로 정책적 활용의 극대화 추구
- 스포츠산업조사의 신뢰성 확보 및 공식적인 지표 공표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사를 진행함
- 스포츠산업의 특성상 영세업체가 많아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대상 사업체 및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을 활용함

### 3 2019년 기준 조사 특징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적용 유지

• 2018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에 이어서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였으며, 총 66개 세세분류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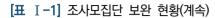
#### ◆ 모집단 보완 및 변경

-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의 사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갱신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구성함
- 또한,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인 이상 사업체 및 정비 필요 업종(4개)에 대한 정비조사를 진행하여 모집단 자료로 활용함
- 모집단 정비 조사시 실질적으로 스포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분류를 위하여 스포츠 관련 사업 영위 비율이 10%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스포츠산업 영위 업체로 규정함
  - ※ 단 특수한 경우 스포츠산업 매출이 10% 미만이나 해당 사업체의 스포츠산업 매출 비중이 큰 업체는 매출 비중 10% 미만의 경우도 모집단에 포함(여행업 및 게임관련 업종)
- 스키장 운영업(1010302)은 별도 보완하였으며, 방송업종(3020105, 3020106, 3020107)은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모집단을 보완함
-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리스트를 정비하고. 모집단을 보완함

#### [표 Ⅰ-1] 조사모집단 보완 현황

(단위: 개)

		2018	2019	スプレ				
		코드	분류	기준 조사	기준 조사	증감		
		전체		103,145	105,445	2,300		
		101010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9	99	-		
		101010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5	94	-1		
		1010103	경주장 운영업	15	15	_		
		101020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890	781	-109		
<u>스포츠</u> 시설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20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521	9,745	224		
VIER	WE COR	VIS COR	WE COB	1010203	수영장 운영업	394	430	36
							1010204	볼링장 운영업
		1010205	당구장 운영업	14,154	14,173	19		
		1010206	골프연습장 운영업	7,635	8,050	415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018	2019	-101
		코드	분류	기준 조사	기준 조사	차이
		1010207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189	182	-7
		1010208	체육공원 운영업	43	47	4
		1010209	기원 운영업	832	774	-58
	스포츠	1010301	골프장 운영업	433	427	-6
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302	스키장 운영업	16	16	
시설업		1010401	낚시장 운영업	892	875	-17
		1010499 1019900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574 3,619	634 4,063	60 444
	스포츠	1019900	시다 스포스시얼 군당합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688	4,063	-33
	시설 건설업	1020001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573	154	-419
	ME CEB	2010101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361	402	41
		2010101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79	288	9
		2010103	자전거 제조업	48	46	-2
		2010104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35	325	-10
		2010105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89	88	-1
	운동	2010106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46	59	13
	및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0	16	-14
	경기	2010201	스포츠 의류 제조업	876	915	39
	용품업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81	174	-7
		201020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59	62	3
		2010204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58	56 150	-2
스포츠		2010301 2010302	스포츠 가방 제조업 스포츠 신발 제조업	155 145	150	
용품업		2010302	스포스 신달 세소입	137	126 120	-19 -17
유모티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2,026	2,003	-23
		2020101	자전거 도매업	205	193	-12
		2020102	스포츠 의류 도매업	678	667	-11
	운동	2020104	스포츠 가방 도매업	19	16	-3
	및	2020105	스포츠 신발 도매업	276	262	-14
	경기용품	2020201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10,702	10,219	-483
	유통	2020202	자전거 소매업	3,298	3,137	-161
	및	2020203	스포츠 의류 소매업	11,032	11,179	147
	임대업	2020204	스포츠 가방 소매업	33	20	-13
		2020205	스포츠 신발 소매업	1,461	1,345	-116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712	787	75
		202030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920 78	966	<u>46</u> -3
		3010100 3010201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1	75 1	<u>-3</u> 0
		3010201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2	55	3
	스포츠	3010301	스포츠 에이전트업	44	39	<u>5</u>
	경기 서비스업	3010302	회원권 대행 판매업	105	122	17
		3010303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29	34	5
		3010399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744	771	27
		3020101	스포츠 신문 발행업	8	8	_
		3020102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46	42	-4
스포츠		3020103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	-	
서비스업	스포츠	3020104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	-	
VI-1—B	정보 서비스업	3020105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12	8	-4
		3020106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7	6	-1
		3020107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5	7	2
		3029900 3030001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태권도 교육기관	17 9,579	9,711	
	스포츠	3030001	대전도 교육기선 무술 교육기관	5,169	5,835	666
	교육기관	303000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9,618	11,290	1672
	기타	3990101	2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424	207	-217
	스포츠	3990199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205	57	-148
	서비스업	3990200	스포츠 여행업	1,418	1422	4

#### ◆ 현장조사

-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량(표본수)이 적은 지역은 조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지방 직영 실사 조직을 활용한 현장조사원을 투입하여 현장조사를 수행
- 복권발행 및 판매업, 스키장운영업,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스포츠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체 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수 확보에 노력

### ◆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Mixed Mode Survey를 활용한 단계적 실시
  - ※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원칙(자기기입식 병행)으로 하고 방문 조사가 어려운 일부 업체는 이메일 및 팩스조사 등 병행

#### ◆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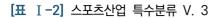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유도를 위하여 응답자 맞춤형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식을 도입
- 조사표의 일관성 및 항목 간 연계성을 고려한 문항 재구성

#### ◆ 조사결과 내검 및 자료처리

- 사전 조사자료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결과 내검 및 집계 철저로 통계 정확성 제고
- 유사 통계자료, 행정자료, 경영공시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자료와 비교·검토, 수준점검을 통하여 자료의 일관성, 정합성, 정확성을 제고
  - ※ 조사자료 검증 및 수준분석을 위한 비교자료
    -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비교·검토
    - 국세청 부가세, 법인세 자료와 비교·검토
    - 기업 경엉 정보 공시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와 비교·검토

#### ◆ 2018년 기준 조사 스포츠산업 분류 변화 적용 유지

- 국가승인통계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산업특수분류」중 개편된 스포츠 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조사를 진행함
- 2012년 기준 조사부터는 3개의 대분류, 20개의 세분류, 65개의 세세분류로 구성되었으나, 2018년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개편으로 2018년 기준 조사부터는 3개의 대분류, 20개의 세분류, 66개의 세세분류로 구성됨
  - ※ 전년과 분류 기준은 동일하나 보다 정확한 스포츠산업 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기준으로 각 사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갱신한 표본 추출틀을 구성함
- 각 업종별 하위 업종에 대한 개념 정의는 「2018년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명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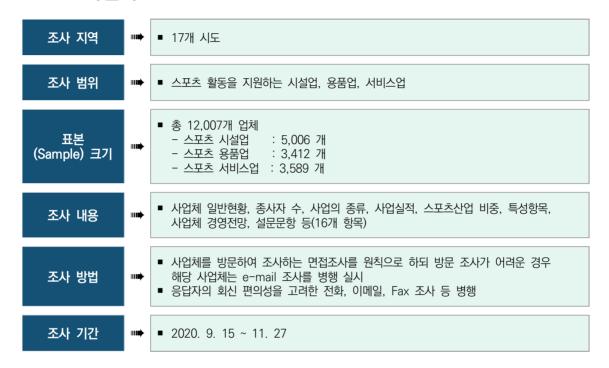
[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101010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10101	경기장 운영업	101010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200	1010103	)103 경주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101020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20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010203	수영장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1011 # =	1010204	볼링장 운영업	91134	볼링장 운영업
		10102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205	당구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101 스포츠		12 202	101020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207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시설업				1010208	체육공원 운영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1010209	기원 운영업	91293	기원 운영업
		10100	골프장 및	1010301	골프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10103	스키장 운영업	1010302	스키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10104	수상스포츠	1010401	낚시장 운영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시설 운영업	1010499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0199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99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02	40000	스포츠	1020001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41226	조경 건설업
	스포츠 시설 건설업	10200	건설업	1020002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2010101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2010101	TO 옷 3기당 3미 제포티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0= 11	2010103	자전거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0101	운동 및 경기용품	2010104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제조업	2010105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2010106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스포츠	201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업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010201	스포츠 의류 제조업	14192	근무복, 직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20102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20102	제품제조업	201020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010204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 H = 2 IU L P	2010301	스포츠 가방 제조업	15129	가방 및 가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20103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103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2010303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 [표 I-2]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운동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020101	LO X 0/101 노메티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20201	및	2020102	자전거 도매업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20201	경기용품	2020103	스포츠 의류 도매업	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도매업	2020104	스포츠 가방 도매업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2020105	스포츠 신발 도매업	46420	신발 도매업
				2020201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202			2020202	TL자기 시메어	47640 47632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스포츠	운동 및			2020202 2020203	자전거 소매업 스포츠 의류 소매업	47419	지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용품업	경기용품		운동	2020203	스포츠 가방 소매업	47419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유통 및 임대업	20202	및	2020204	스포츠 기당 소매업	47430	신발 소매업
	0918	20202	경기용품	2020203	으로스 연결 꼬매리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소매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2020200		47993	방문 판매업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운동 및			17000	
		20203	경기용품 임대업	202030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76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30101	스포츠 경기업	3010100	스포츠 경기업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3010201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301	30102	스포츠 베팅업	3010299	기타 스포츠 베팅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30103	스포츠	3010301	스포츠 에이전트업	73901	매니저업
				3010302	회원권 대행 판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마케팅업	3010303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71531	경영컨설팅업
				3010399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3020101	스포츠 신문 발행업	58121	신문 발행업
				3020102	스포츠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302 스포츠		스포츠	3020103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20201	미디어업	3020104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정보			3020105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스포츠	서비스업			3020106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60222	유선 방송업
서비스업				3020107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0299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029900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000			3030001	태권도 교육기관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303 스포츠	30300	스포츠	3030002	무술 교육기관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30300	교육기관	3030099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0000000	719 === #4710	85613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39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타 <u>'초</u>	공급업	3990101	온라인 모바일 스포츠 게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000101	임 개발 및 공급업	58212	돼일게임소프웨어개발및공급업
				3990199	기타스 <u>포츠게임개발및공급업</u>	58219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990200 스포츠 여행언		75210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 4 조사내용 및 방법

### 4.1 조사설계



### 4.2 조사대상

- ◆ 본 조사는 조사기준일(2019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며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 본 조사에 포함되는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의 3개 산업을 대분류로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 스포츠 시설업은 경기장 운영업, 참여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수상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 건설업으로 구분
- 스포츠 용품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으로 구분
- 스포츠 서비스업은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미디어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스포츠 여행업으로 구분

### [표 [-3] 조사대상

대분류	중분류명
	■ 경기장 운영업
	■ 참여 스포츠시설 운영업
1. 스포츠 시설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1. 스포스 시설립	■ 수상 스포츠시설 운영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스포츠 건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범선, 요트, 카누, 카약 스포츠용 자전거, 자전거 부품 볼링용구, 당구용구 회전목마, 기타 흥행장용품 등)
	■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캠핑용 직물제품 구명자켓, 구명벨트스포츠의류 제조 스포츠의류 부분품 등)
2. 스포츠 용품업	■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산용 배낭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등)
	■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 스포츠 경기업
	■ 스포츠 베팅업
	■ 스포츠 마케팅업
3. 스포츠 서비스업	■ 스포츠 미디어업
O /\-	■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 스포츠 교육기관
	■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 스포츠 여행업

### 4.3 조사단위

- ◆ 사업체 단위 : 단독사업체, 지사(지점) 등
- ◆ 개별 사업체「본사(지사 제외), 지사(점), 영업소 등」별 조사표 작성
- 본사와 지사가 표본으로 동시에 대상사업체로 선정된 경우 본사를 대상으로 기업체 단위 조사

### 4.4 조사절차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관련기관 및 부서		
	조사항목 설정 및 조사표 설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조사표 개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표본설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그니티브컨설팅		
준 비 단 계	실시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코그니티브컨설팅		
	입력·내검을 위한 조사표·지침서 점검	㈜코그니티브컨설팅		
	조사지침서 작성 및 조사표류 인쇄	㈜코그니티브컨설팅		
	조사원 채용	㈜코그니티브컨설팅		
	담당자 교육 및 조사원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코그니티브컨설팅		
	준비조사	㈜코그니티브컨설팅		
현 장 조 사	본조사 실시	㈜코그니티브컨설팅		
	조사표 내검 및 입력	㈜코그니티브컨설팅		
	조사표 제출	㈜코그니티브컨설팅		
	조사결과 검토 및 집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코그니티브컨설팅		
자료처리 및 집계 · 제출				
, .,_	최종보고서 작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코그니티브컨설팅		

### 4.5 조사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써 포괄범위는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업, 용품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

####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산업특수분류」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조사모집단 :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특수분류」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 표본 추출틀 :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 사업체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업체별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기준으로 갱신한 명부

### ◆ 조사모집단 보완

-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66개 스포츠산업 산업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사업 내용을 확인 과정을 통해 모집단 확정 업체, 모집단 포함 여부 확인 필요업체. 모집단 제외 업체로 분류 함
  - 모집단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업체의 경우 모집단 판별 조사, 전년 조사 결과, 행정자료 매칭 등을 통하여 보완 과정을 거침
  - (모집단 판별조사)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 내용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영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아래 4개 산업세세분류\*에 속한 15,456개 사업체 \* 1020001, 1020002, 3990101, 3990200
  - (별도보완) 스키장운영업(1010302)은 별도 보완하였으며, 방송업종\*\*은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에서 스포츠 및 스포츠 관련 취미분야를 공급하는 사업체를 추가 보완함
    - \*\* 3020105, 3020106, 3020107
- (보완방법) 위에 언급한 산업세세분류에 속하는 사업체를 전화조사 및 전년조사와 교차검토, 행정자료 매칭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대상외' 처리하여 보완하고, 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수를 이용하여 최종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추정함

### ◆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 수 추정 및 가중치 계산

세세분류 업종별(h) 층별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 $(\hat{N}_h)$ 를 다음과 같이 추정

$$\widehat{N_h} = \sum_{i=1}^{K} \left( N_{hi}^S \times \left( \frac{n_{hi}^S - I_{hi}}{n_{hi}^S} \right) \right) + n_h^{'C}$$

 $N_{hi}^{S}$ : 확정모집단의 h업종 i층 표본층 전체 사업체 수

i : 표본 층 첨자 (i=1, ···, K)

 $n_{hi}^{S}$ : 설계 당시 h업종 i층 표본 사업체 수  $n_{h}^{'C}$ : 조사 완료된 h업종 전수층 사업체 수

 $I_{hi}$ : h업종 i층의 부적격 사업체 수

 $\widehat{N}_h$ : h업종 i층의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추정 사업체 수

### ◆ 모집단 사업체 수 추정결과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 수는 105,445개로 추정

#### [표 I-4]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42,122	39.9
스포츠 용품업	33,621	31.9
스포츠 서비스업	29,702	28.2
합 계	105,445	100.0

### [그림 I-1]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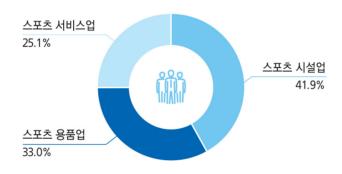


### [표 I-5] 대분류별 종사자 수 비율

(단위 : 천명, %)

구 분	종사자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178	41.9
스포츠 용품업	140	33.0
스포츠 서비스업	106	25.1
합 계	424	100.0

### [그림 I-2] 대분류별 종사자 수 비율



### [표 I-6] 대분류별 지역별 모집단 비율

(단위 : 개 %)

								L 11 · · ·   /0/
구 분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		합계	
ТЕ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서울특별시	7,636	18.1	5,724	17.0	6,113	20.6	19,473	18.5
부산광역시	2,606	6.2	2,580	7.7	2,135	7.2	7,321	6.9
대구광역시	1,872	4.4	1,818	5.4	1,640	5.5	5,330	5.1
인천광역시	2,198	5.2	1,506	4.5	1,455	4.9	5,159	4.9
광주광역시	1,199	2.8	872	2.6	983	3.3	3,054	2.9
대전광역시	1,178	2.8	976	2.9	891	3.0	3,045	2.9
울산광역시	1,099	2.6	719	2.1	663	2.2	2,481	2.4
세종특별자치시	172	0.4	90	0.3	188	0.6	450	0.4
경기도	10,218	24.3	8,281	24.6	7,153	24.1	25,652	24.3
강원도	1,791	4.3	1,484	4.4	908	3.1	4,183	4.0
충청북도	1,574	3.7	962	2.9	855	2.9	3,391	3.2
충청남도	1,775	4.2	1,433	4.3	1,033	3.5	4,241	4.0
전라북도	1,473	3.5	1,335	4.0	1,013	3.4	3,821	3.6
전라남도	1,550	3.7	1,262	3.8	862	2.9	3,674	3.5
경상북도	2,365	5.6	1,778	5.3	1,339	4.5	5,482	5.2
경상남도	2,751	6.5	2,291	6.8	1,909	6.4	6,951	6.6
제주특별자치도	665	1.6	510	1.5	562	1.9	1,737	1.6
합 계	42,122	39.9	33,621	31.9	29,702	28.2	105,445	100.0

#### ◆ 모집단의 층화

- 공표범위는 전국 17개 시도별 3개 대분류별 주요항목 및 66개 세세분류 업종별 주요항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표본의 크기를 결정함
  - 층화변수 : 업종, 종사자 규모, 지역
- 2017년부터 스포츠산업 대분류에 대한 지역별 통계량을 공표함. 따라서 대분류별 지역별 표본의 할당을 우선 시행함
- 각 세세분류 및 종사자 규모층에 결정된 표본크기는 각 층 내에서 각 시도별 표본 사업체 수에 제곱근비례할당함

### 4.6 표본규모

◆ 3개 대분류(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별로 제곱근비례할당된 표본을 지역별로 멱할당(p=0.4) 후, 지역 내 세세분류 업종과 종사자 규모에 따라 제곱근비례할당을 하는 경우 세세분류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가 25% 내외로 통제 되어 이를 최종 표본의 크기로 결정함

### ◆ 표본규모

- 2017년부터 공표범위를 스포츠산업 대분류 및 지역으로 변경함.
  - 스포츠산업 대분류 및 지역별 추정치의 생산과 공표를 위해 우선 대분류별 지역별 표본 할당 시행
  - 네이만할당과 제곱근 비례할당, 멱등 할당을 통해 대분류\*지역별 상대표준오차가 25% 이내가 되는 최적 표본의 할당 방법을 시뮬레이션 함
  - 대분류\*지역별 네이만할당과 제곱근비례할당된 표본에 대한 상대표준오차가 두 할당 방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제곱근비례할당이 상대표준오차가 상대적으로 적음
  - 따라서 대분류별로 제곱근 비례할당된 표본 사업체 수를 세세분류별에 제곱근비례할당 할당함
- 최종 표본의 할당 방법 및 최종 표본의 크기

대분류별 지역별 표본할당 (네이만배분/ 제곱근비례할당)

대분류내 세세분류에 표본할당 (상대표준오차 : 네이만배분)제곱근비례할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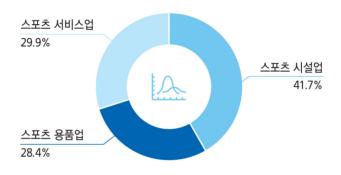
최종표본규모 12,007개 사업체 (제곱근비례할당)

### [표 I-7]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5,006	41.7
스포츠 용품업	3,412	28.4
스포츠 서비스업	3,589	29.9
합 계	12,007	100.0

[그림 I-3]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비교



### [표 I-8] '18~'19 세세분류별 표본규모 현황

(단위 : 개)

	2018	2019			
		코드	분류	기준 조사	기준 조사
			체	12,319	12,007
		1010101	실내 경기장 운영업	79	87
		1010102	실외 경기장 운영업	72	90
		1010103	경주장 운영업	15	15
		101020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284	422
		101020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888	808
		1010203	수영장 운영업	162	245
	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204	볼링장 운영업	305	257
		1010205	당구장 운영업	511	506
		1010206	골프연습장 운영업	811	676
<u>스포츠</u> 시설업		1010207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30	93
시크ㅂ		1010208	체육공원 운영업	37	44
		1010209	기원 운영업	66	128
		1010301	골프장 운영업	229	315
		1010302	스키장 운영업	12	16
		1010401	낚시장 운영업	113	163
		1010499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95	211
		10199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463	493
	스포츠	1020001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387	310
	시설 건설업	1020002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239	127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018	2019
		코드	분류	기준 조사	기준 조사
		2010101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111	148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86	116
		2010103	자전거 제조업	31	32
		2010104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97	130
	운동	2010105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38	52
스포츠	및	2010106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4	43
용품업	경기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4	13
	용품업	2010201	스포츠 의류 제조업	178	211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53	88
		201020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34	37
		2010204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17	32
		2010301	스포츠 가방 제조업	37	40
	운동 및	20103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58	57
	경기용품업	2010303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44	50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207	287
		2020101	자전거 도매업	59	79
		2020102	스포츠 의류 도매업	111	148
		2020103	스포츠 가방 도매업	16	15
스포츠	O = 11	2020101	스포츠 신발 도매업	73	91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2020103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573	451
	유통 및	2020201	자전거 소매업	245	221
	임대업	2020202	스포츠 의류 소매업	492	471
		2020203	스포츠 가방 소매업	26	15
		2020204	스포츠 신발 소매업	179	232
		2020203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94	155
		202020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97	198
		3010100	스포츠 경기업	56	70
		3010100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1	
		3010201	기타 스포츠 베팅업	52	<u>'</u> 55
	스포츠 경기	3010299	스포츠 에이전트업	22	28
	서비스업	3010301	회원권 대행 판매업	33	64
		3010302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22	30
		3010303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289	393
			시나 스포스 비계형합 스포츠 신문 발행업	8	
		3020101 3020102	스포츠 전문 필명합	22	8 29
<u> 스포츠</u>	, n = 11u	3020103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_	
서비스업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020104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 10	
	시미그급	3020105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12	8
		3020106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7 5	6 7
		3020107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029900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1 100	12
	<u> 스포츠</u>	3030001	태권도 교육기관	1,168	823
	교육기관	3030002	무술 교육기관	688	557
		3030099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35	970
	기타	3990101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15	107
	스포츠	3990199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36	44
	서비스업	3990200	스포츠 여행업	1,126	377

### 4.7 시장규모 추정

- ◆ 대분류별 주요항목 총계 추정
- 대분류별 세세분류업종의 총계 추정
- 주요 변수에 대한 스포츠산업 대분류\*지역별 총계의 추정

• 스포츠산업 대분류의 총계 추정식 
$$\widehat{X_d} = \sum_{h} \widehat{X}_{dh}$$

• 스포츠산업 대분류별 지역별 총계 추정식

$$\hat{X}_{da} = \sum_{h} \hat{X}_{dah}$$
  $\hat{X}_{dah} = X_{dahc} + \hat{X}_{dahs}$   $X_{dahc} = \sum_{j} x_{dahj}$  (세세분류가 전수조사되는 경우)  $\hat{X}_{dahs} = \sum_{j} w_{dah} x_{dahj}$  (세세분류가 표본조사되는 경우)

• 대분류별 세세분류 업종의 총계 추정식

$$\hat{X}_{dh} = X_{dhc} + \hat{X}_{dhs}$$
 $X_{dhc} = \sum_{j} x_{dhj} \text{ (세세분류가 전수조사되는 경우)}$ 

$$\hat{X}_{dhs}=\sum_{j}w_{dh}\,x_{dhj}$$
 단,  $w_{dh}=rac{N_{dh}}{n_{dh}}$  (세세분류가 표본조사되는 경우)

첨자 h : 세세분류

c : 전수층

a : 지역

d : 대분류(1,2,3)

s : 표본층

j : 조사된 사업체

변수 n : 표본수

N : 모집단수

 $\hat{X}$  : 특성치 총계

x : 조사된 사업체의 특성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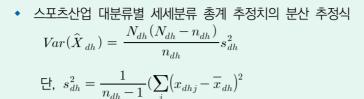
### ◆ 분산 추정

• 스포츠산업 대분류별 지역별 총계 추정치의 분산 추정식

$$Var(\hat{X}_{da}) = \sum_{h} Var(\hat{X}_{dah})$$

$$Var(\widehat{\overline{X}}_{dah}) = \frac{N_{dah} - n_{dah}}{N_{dah}} \frac{s_{dah}^2}{n_{dah}}$$

$$s_{dah}^{2} = \frac{1}{n_{dah} - 1} \sum_{j} (x_{dahj} - \overline{x}_{dah})^{2}$$



#### ◆ 분산 추정

$$\begin{split} SE\left(\hat{X}\right) &= \sqrt{V(\hat{X})} \\ \widehat{rse} &= \frac{SE(\hat{X})}{\hat{X}} \times 100\% \end{split}$$

### ◆ 주요항목 무응답 대체

- 전수층에서 무응답이나 응답거절로 응답률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 무응답에 대한 대체가 필요함
- 무응답은 단위 무응답과 항목 무응답<sup>2)</sup>으로 구분되며, 단위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요항목에 대한 2차 자료(매출액, 종사자 수 등)를 통해 이를 보정<sup>3)</sup>하였고, 항목 무응답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항목의 무응답 대체를 위해서 무응답대체(imputation)를 사용하였음
- 본 조사에서 사용된 무응답 대체 방법은 층 내에서 무응답이 발생한 조사항목과 보조 변수간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모형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다중회귀대체방법과 평균대체방법을 병행 실시함
  - ・ 상관관계가 높은 두 변수들 간 회귀식을 이용한 대체

     모집단
      $\rho_1$  

     Corr (매출액, 종사자 수)
     전수층
      $\rho_2$  

     표본층
      $\rho_3$  

     모집단
      $\rho_{11}$  

     Corr (log(매출액), log(종사자 수))
     전수층
      $\rho_{21}$  

     표본층
      $\rho_{31}$

$$\log(\text{매출액}_i) = \alpha_1 + \beta_1 \times \log(\text{종사자수}_i)$$
 : 전수층  $\log(\text{매출액}_i) = \alpha_2 + \beta_2 \times \log(\text{종사자수}_i)$  : 표본층

<sup>2)</sup> 단위 무응답(개체 무응답, unit nonresponse)은 표본 사업체가 조사참여 자체를 거부하거나 접촉이 불가능하여 해당 사업체의 전체 조사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고, 항목 무응답(item nonresponse)은 표본 사업체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 응답을 거부한 경우를 말함

<sup>3)</sup> 단위 무응답 일부 전수층에 대하여 2차 자료를 통하여 보정함

### 4.8 조사의 한계 및 유용성

### ◆ 조사의 한계

- 표본설계의 특성변수는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관심 항목인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사업체가 응답한 스포츠산업 비중을 이용해 역계산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변동이 반영되어 설계상의 기준 상대표준오차에 비해 관심항목의 상대표준오차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음
-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대상 사업체가 산재되고 표본대체가 많아 조사원의 현장조사에 시간 및 경비가 많이 소요됨
- 현 특수분류(스포츠산업)의 구분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중분류 내에 산업분류 간 동질성이 부족하여 특성항목별 조사에 한계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정의되어 있는 세부항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조사 시 어려움이 있음
  - 스포츠 의류, 경기용 신발, 스포츠용 자전거, 흥행장용품 등의 기준, 골프용, 기타 운동용 가방, 스포츠 오락용 기계, 바둑 및 장기 등의 포함 여부 등 구분이 곤란
- 조사기준과 사업체 회계기준의 차이에 따라 사업실적이 다르게 작성되어 총량 추정에 변수로 작용하므로 추후 조사 시 조사범위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
- 2019년 기준 조사에서의 조직형태별 자료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참고사항으로만 활용 가능
  - 표본설계 시 조직형태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지 않음
  - 표본추출 과다 혹은 과소에 따라 조사결과에 변동이 있어 추정된 값의 정확성이 떨어짐
  - 조사과정에서 표본대체를 함에 있어 스포츠산업 중분류를 감안하여 표본 대체하고 조직형태별은 고려하지 않음
- 본 조사의 인력 현황은 사업체 전체 인력 현황을 수집, 추정한 결과로 사업체가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스포츠산업 종사인력 이외의 인력이 함께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 2019년 기준 조사의 유용성

- 스포츠산업관련 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유지
  - 통계법 제18조 1항 및 제2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13021호)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적용 유지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는 2018년 기준 조사시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을 총 66개 세세분류로 진행(2017년 기준 조사까지는 스포츠산업을 총 6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

- 17개 시도별 3개 대분류별 주요항목 결과 산출
  - 2019년 기준 조사는 지역별(17개 시도) 공표를 위해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하고, 17개 시도별 3개 대분류별 주요항목을 공표함
- ◆ 모집단 보완
-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의 사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갱신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구성함
- 또한,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인 이상 사업체 및 정비 필요 업종(4개)에 대한 정비조사를 진행하여 모집단 자료로 활용함
- 모집단 정비 조사시 실질적으로 스포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분류를 위하여 스포츠 관련 사업 영위 비율이 10%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스포츠산업 영위 업체로 규정함
  - ※ 단 특수한 경우 스포츠산업 매출이 10% 미만이나 해당 사업체의 스포츠산업 매출 비중이 큰 업체는 매출 비중 10% 미만의 경우도 모집단에 포함(여행업 및 게임관련 업종)

#### ◆ 현장조사

-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량(표본 수)이 적은 지역은 조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복권발행 및 판매업,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스포츠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체 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 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 수 확보에 노력

#### ◆ 조사표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유도를 위하여 응답자 맞춤형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식을 도입
- 조사표의 일관성 및 항목 간 연계성을 고려한 문항 재구성

# 光 然 为 为 外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제 2 장

스포츠산업체 일반현황

## 1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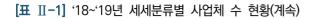
## 1.1 모집단 사업체

- ◆ 본 조사는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기준으로 추출한 모집단 총 105,445개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2011년 기준 조사까지는 15개 세분류(45개 세세분류)로 구축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이하 구분류)로 진행이 되었으며, 2012년 기준 조사부터 6년째 20개 세분류, 65개 세세분류(2018년 기준 조사부터 66개 세세분류)로 새로이 구축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3」(이하 신분류)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2019년 기준 전체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는 총 105,445개로 추정되었으며, 세세분류별로는 당구장 운영업이 1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Ⅱ-1] '18~'19년 세세분류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구분			2018	3년	2019년	
	↑₹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전 처		103,145	100.0	105,445	100.0
		실내 경기장 운영업	99	0.1	99	0.1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95	0.1	94	0.1
		경주장 운영업	15	0.0	15	0.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890	0.9	781	0.7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521	9.2	9,745	9.2
		수영장 운영업	394	0.4	430	0.4
		볼링장 운영업	761	0.7	908	0.9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14,154	13.7	14,173	13.4
		골프연습장 운영업	7,635	7.4	8,050	7.6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189	0.2	182	0.2
1120		체육공원 운영업	43	0.0	47	0.0
		기원 운영업	832	0.8	774	0.7
	2011 U 1211 OMO	골프장 운영업	433	0.4	427	0.4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16	0.0	16	0.0
	수상스포츠시설	낚시장 운영업	892	0.9	875	0.8
-	운영업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574	0.6	634	0.6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619	3.5	4,063	3.9
	1 T = 7140	스포츠시설 건설업	688	0.7	655	0.6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573	0.6	154	0.1



<b>구</b> 분 -		2018년		2019년		
	<del>1</del> 1	<b>±</b>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361	0.3	402	0.4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79	0.3	288	0.3
		자전거 제조업	48	0.0	46	0.0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35	0.3	325	0.3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89	0.1	88	0.1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46	0.0	59	0.1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0	0.0	16	0.0
		스포츠 의류 제조업	876	0.8	915	0.9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81	0.2	174	0.2
	선인 심규제품 제소합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59	0.1	62	0.1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58 155	0.1	56 150	0.1
, T =	스포츠 가방 및	스포츠 가방 제조업 스포츠 신발 제조업	145	0.2	126	0.1
스포츠 용품업	신발 제조업	스포츠 전날 세요합	137	0.1	120	0.1
000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2,026	2.0	2,003	1.9
		자전거 도매업	205	0.2	193	0.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스포츠 의류 도매업	678	0.7	667	0.6
	20 % 0.100 - 110	스포츠 가방 도매업	19	0.0	16	0.0
		스포츠 신발 도매업	276	0.3	262	0.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10,702	10.4	10,219	9.7
		자전거 소매업	3,298	3.2	3,137	3.0
		스포츠 의류 소매업	11,032	10.7	11,179	10.6
		스포츠 가방 소매업	33	0.0	20	0.0
		스포츠 신발 소매업	1,461	1.4	1,345	1.3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712	0.7	787	0.7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920	0.9	966	0.9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78	0.1	75	0.1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1	0.0	1	0.0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2	0.1	55	0.1
		스포츠 에이전트업	44	0.0	39	0.0
	스포츠 마케팅업	회원권 대행 판매업	105	0.1	122	0.1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29	0.0	34	0.0
		기타스포츠 마케팅업	744	0.7	771	0.7
		스포츠 신문 발행업	-	0.0	8	0.0
스포츠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46 12	0.0	42	0.0
서비스업	스포스 미디어집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7	0.0	6	0.0
		스포츠 관련 유선 및 기타 방송업	5	0.0	7	0.0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언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17	0.0	12	0.0
	1 1 01-1-1-1	태권도 교육기관	9,579	9.3	9,711	9.2
	스포츠 교육기관	무술 교육기관	5,169	5.0	5,835	5.5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9,618	9.3	11,290	10.7
	1 H = 3101 -1111 51 -3-51	원인 돼일스퍄게임개발및공급업	424	0.4	207	0.2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205	0.2	57	0.1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1,418	1.4	1,422	1.3

• 2019년 기준 20개 세분류별 사업체 수는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스포츠 교육기관이 25.5%,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이 25.3% 등의 순으로 추정됨

[표 Ⅱ-2] '18~'19년 세분류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

rud 2	Mes	2018	8년	2019년		
대분류	세분류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경기장 운영업	209	0.2	208	0.2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34,419	33.4	35,090	33.3	
스포츠 시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449	0.4	443	0.4	
그포스 시킬립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1,466	1.4	1,509	1.4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	3,619	3.5	4,063	3.9	
	스포츠건설업	1,261	1.2	809	0.8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188	1.2	1,224	1.2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1,174	1.1	1,207	1.1	
사파호 유프어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437	0.4	396	0.4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204	3.1	3,141	3.0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27,238	26.4	26,687	25.3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920	0.9	966	0.9	
	스포츠 경기업	78	0.1	75	0.1	
	스포츠 베팅업	53	0.1	56	0.1	
	스포츠 마케팅업	922	0.9	966	0.9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미디어업	78	0.1	71	0.1	
프로즈 시미교립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17	0.0	12	0.0	
	스포츠 교육기관	24,366	23.6	26,836	25.5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629	0.6	264	0.3	
	스포츠 여행업	1,418	1.4	1,422	1.3	
	합 계	103,145	100.0	105,445	100.0	

## 1.2 설립연도

◆ 스포츠산업 사업체의 설립년도의 비율을 살펴보면 5년 이하가 5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Ⅱ-3] '17~'19년 설립연도 비율

(단위 : 천개, %)

구 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2017년	사업체 수	54.2	24.9	10.7	5.7	5.6
2017년	비중	53.6	24.6	10.6	5.6	5.5
2018년	사업체 수	51.4	24.3	11.4	7.9	8.1
2010년	비중	49.8	23.6	11.1	7.6	7.9
201013	사업체 수	57.1	24.3	11.7	6.5	5.9
2019년	비중	54.2	23.0	11.1	6.1	5.6

## 1.3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 조직형태 및 업종별로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의 스포츠 시설업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 용품업 26.4%, 스포츠서비스업 24.9% 순으로 나타남

[표 Ⅱ-4] '19년 조직형태 및 업종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 분	대분류	사업체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37,604	35.7
개인사업체	스포츠 용품업	27,789	26.4
	스포츠 서비스업	26,287	24.9
	스포츠 시설업	3,085	2.9
회사법인	스포츠 용품업	5,809	5.5
	스포츠 서비스업	2,362	2.2
	스포츠 시설업	1,093	1.0
회사이외 법인	스포츠 용품업	18	0.0
	스포츠 서비스업	318	0.3
	스포츠 시설업	340	0.3
비법인단체	스포츠 용품업	5	0.0
	스포츠 서비스업	735	0.7
	합 계	105,445	100.0

◆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는 개인사업체가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회사법인 10.7%를 점유하고 있음

#### [표 Ⅱ-5] '19년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 수	비중
개인사업체	91,681	86.9
회사법인	11,256	10.7
회사이외 법인	1,428	1.4
비법인단체	1,080	1.0
합 계	105,445	100.0

## 1.4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 ◆ 종사자 수별 사업체는 종사자 1~4인 사업체가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종사자 5~9인 사업체가 8.7%로 10인 미만 사업체가 95.8%로 나타남
- 20인 이상 사업체는 1.7%로 대부분의 스포츠 사업체가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음

### [표 Ⅱ-6] '18~'19년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단위:개%)

구 분	2018	3년도	2019년도		
те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1~4인	89,924	87.2	91,834	87.1	
5~9인	8,160	7.9	9,197	8.7	
10~19인	2,695	2.6	2,625	2.5	
20~49인	1,409	1.4	1,063	1.0	
50인 이상	957	0.9	726	0.7	
합 계	103,145	100.0	105,445	100.0	

### [표 Ⅱ-7] '18~'19년 종사자 수 및 업종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 분	대분류	2018	년도	2019년도		
ТЕ	네근듀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34,973	33.9	35,690	33.8	
1~4명	스포츠 용품업	30,537	29.6	30,034	28.5	
	스포츠 서비스업	24,414	23.7	26,110	24.8	
	스포츠 시설업	3,613	3.5	3,859	3.7	
5~9명	스포츠 용품업	2,452	2.4	2,541	2.4	
	스포츠 서비스업	2,095	2.0	2,797	2.7	
	스포츠 시설업	1,472	1.4	1,455	1.4	
10~19명	스포츠 용품업	640	0.6	639	0.6	
	스포츠 서비스업	583	0.6	531	0.5	
	스포츠 시설업	768	0.7	633	0.6	
20~49명	스포츠 용품업	349	0.3	290	0.3	
	스포츠 서비스업	292	0.3	140	0.1	
	스포츠 시설업	597	0.6	485	0.5	
50명 이상	스포츠 용품업	183	0.2	117	0.1	
	스포츠 서비스업	177	0.2	124	0.1	
합 계		103,145	100.0	105,445	100.0	

## 1.5 산업분류별 사업체 수

◆ 산업분류 대분류별 사업체 수는 스포츠 시설업이 3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스포츠 용품업은 31.9%, 스포츠 서비스업이 28.2%임

[표 II-8] '18~'19년 산업분류별(대분류) 사업체 수

(단위: 개%)

구 분	2018	8년도	2019년도		
TE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41,423	40.2	42,122	39.9	
스포츠 용품업	34,161	33.1	33,621	31.9	
스포츠 서비스업	27,561	26.7	29,702	28.2	
합 계	103,145	100.0	105,445	100.0	

## 1.6 지역별 사업체 수

◆ 지역별 사업체 수는 경기도가 2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8.5%), 부산광역시(6.9%), 경상남도(6.6%), 경상북도(5.2%), 대구광역시(5.1%) 등의 비중임

[표 Ⅱ-9] '19년 지역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단위: 개%)

7 8	스포츠 .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네비스업	합:	계
구 분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서울특별시	7,636	18.1	5,724	17.0	6,113	20.6	19,473	18.5
부산광역시	2,606	6.2	2,580	7.7	2,135	7.2	7,321	6.9
대구광역시	1,872	4.4	1,818	5.4	1,640	5.5	5,330	5.1
인천광역시	2,198	5.2	1,506	4.5	1,455	4.9	5,159	4.9
광주광역시	1,199	2.8	872	2.6	983	3.3	3,054	2.9
대전광역시	1,178	2.8	976	2.9	891	3.0	3,045	2.9
울산광역시	1,099	2.6	719	2.1	663	2.2	2,481	2.4
세종특별자치시	172	0.4	90	0.3	188	0.6	450	0.4
경기도	10,218	24.3	8,281	24.6	7,153	24.1	25,652	24.3
강원도	1,791	4.3	1,484	4.4	908	3.1	4,183	4.0
충청북도	1,574	3.7	962	2.9	855	2.9	3,391	3.2
충청남도	1,775	4.2	1,433	4.3	1,033	3.5	4,241	4.0
전라북도	1,473	3.5	1,335	4.0	1,013	3.4	3,821	3.6
전라남도	1,550	3.7	1,262	3.8	862	2.9	3,674	3.5
경상북도	2,365	5.6	1,778	5.3	1,339	4.5	5,482	5.2
경상남도	2,751	6.5	2,291	6.8	1,909	6.4	6,951	6.6
제주특별자치도	665	1.6	510	1.5	562	1.9	1,737	1.6
합 계	42,122	100.0	33,621	100.0	29,702	100.0	105,445	100.0

# 光 然 为 为 外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 제 3 장

#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 1. 총 괄
- 2. 매출액
- 3. 종사자 수
- 4. 사업실적
- 5. 인력충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 6. 특성항목
- 7. 스포츠산업 현안 조사 결과
- 8. 성과 및 제언

## 1 총 괄

## 1.1 2019년 기준 조사 스포츠산업 요약

-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을 요약하면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의 추정 개수는 10만 5,445개,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80조 6,84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출액 중 내수가 78조 8,680억 원, 수출이 1조 8160억 원으로 각각 조사됨
-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전년대비 2,300(2.2%)개 늘어난 105,445개로 추정됨
- ◆ 종사자 수는 44만 9천명으로 2018년 대비 1만 4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 80조 6,840억 원 중 영업이익은 6조 9,490억 원으로 8.6%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Ⅲ-1] '15~'19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요악

(단위: 개, 천명, 십억원)

	업체수	종사자	매출액			영업이익
구 분	(개)	등시시 (천명)	(십억원)	내수 (십억원)	수출 (십억원)	(십억원)
2019년 기준	105,445	449	80,684 (75,581)	78,868 (73,765)	1,816 (1,816)	6,949 (6,948)
2018년 기준	103,145	435	78,067 (73,603)	76,466 (72,002)	1,601 (1,601)	6,582 (6,582)
2017년 기준	101,207	423	74,696 (70,745)	73,350 (69,399)	1,346 (1,346)	6,131 (6,131)
2016년 기준	95,387	398	72,608 (68,432)	71,318 (67,142)	1,290 (1,290)	6,214 (6,214)
2015년 기준	93,350	383	68,350 (65,145)	67,340 (64,135)	1,314 (1,314)	5,912 (5,912)

<sup>※</sup> 괄호( )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은 3개년 결과에 대해서만 반영

## 2 매출액

## 2.1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

◆ 산업분류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스포츠 의류 소매업의 매출액이 8.7%로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다음으로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8.5%),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7.7%), 골프장 운영업(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 '17~'19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	7년	201	8년	2019년		
	7	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전	체	74,696 (70,745)	100.0	78,067 (73,603)	100.0	80,684 (75,581)	100.0
		실내 경기장 운영업	200	0.3	229	0.3	220	0.3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206	0.3	300	0.4	315	0.4
		경주장 운영업	3,482	4.7	3,225	4.1	3,022	3.7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84	1.3	1,236	1.6	1,214	1.5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428	1.9	1,938	2.5	2,198	2.7
		수영장 운영업	239	0.3	374	0.5	395	0.5
	ᆉᄊᆺ푸	볼링장 운영업	158	0.2	231	0.3	283	0.4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730	1.0	1,001	1.3	1,015	1.3
스포츠	VIE TOR	골프연습장 운영업	1,618	2.2	2,005	2.6	2,312	2.9
스포스 시설업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10	0.0	12	0.0	13	0.0
120		체육공원 운영업	149	0.2	138	0.2	138	0.2
		기원 운영업	30	0.0	37	0.0	36	0.0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5,169	6.9	5,419	6.9	5,899	7.3
		스키장 운영업	861	1.2	1,038	1.3	1,044	1.3
	수상스포츠시설	낚시장 운영업	46	0.1	60	0.1	90	0.1
	운영업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66	0.1	93	0.1	118	0.1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06	0.4	478	0.6	612	0.8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1,248	1.7	1,287	1.6	1,224	1.5
	으포스 신설법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613	0.8	747	1.0	600	0.7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488	0.7	678	0.9	691	0.9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86	0.5	454	0.6	482	0.6
	05 8 3305	자전거 제조업	92	0.1	168	0.2	151	0.2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70	0.5	423	0.5	413	0.5
000	VIII- E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129	0.2	132	0.2	142	0.2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_	_	52	0.1	75	0.1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03	0.3	216	0.3	194	0.2
※ 관증(	)아이 수자는 체유지	흐트표권 제이 매추애 혀화이						

※ 괄호( )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표 III-2] '17~'19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계속)

		, H	201	7년	201	8년	2019년	
	Т	<sup>1</sup> 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스포츠 의류 제조업	4,443	5.9	4,140	5.3	4,031	5.0
	스포츠 의류 및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09	0.1	114	0.1	108	0.1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72	0.1	82	0.1	84	0.1
	.,—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41	0.1	43	0.1	41	0.1
	스포츠 가방 및	스포츠 가방 제조업	117	0.2	164	0.2	161	0.2
	신발 제조업	스포츠 신발 제조업	707	0.9	772	1.0	738	0.9
	Ce mining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240	0.3	209	0.3	216	0.3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5,944	8.0	5,975	7.7	6,174	7.7
	으도 미 겨기요프	자전거 도매업	508	0.7	440	0.6	438	0.5
스포츠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스포츠 의류 도매업	2,179	2.9	2,748	3.5	2,763	3.4
용품업		스포츠 가방 도매업	121	0.2	146	0.2	141	0.2
		스포츠 신발 도매업	2,206	3.0	2,368	3.0	2,560	3.2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3,548	4.7	3,825	4.9	3,846	4.8
		자전거 소매업	663	0.9	655	0.8	636	8.0
	운동 및 경기용품	스포츠 의류 소매업	7,303	9.8	6,377	8.2	7,034	8.7
	소매업	스포츠 가방 소매업	22	0.0	21	0.0	18	0.0
		스포츠 신발 소매업	3,434	4.6	3,354	4.3	3,343	4.1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554	0.7	680	0.9	772	1.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119	0.2	138	0.2	155	0.2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732	1.0	740	0.9	758	0.9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4,199 (249)	5.6	4,743 (279)	6.1	5,406 (303)	6.7
		기타스포츠시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7,666	10.3	7,073	9.1	6,841	8.5
		스포츠 에이전트업	28	0.0	34	0.0	45	0.1
	스포츠 마케팅업	회원권 대행 판매업	144	0.2	124	0.2	132	0.2
	프로즈 미계당답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11	0.0	21	0.0	22	0.0
		기타스포츠 마케팅업	1,684	2.3	1,843	2.4	1,896	2.3
		스포츠 신문 발행업	59	0.1	49	0.1	43	0.1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9	0.0	40	0.1	47	0.1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_	_	_	-	_	
스포츠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	_	_	_	-	
서비스업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315	0.4	242	0.3	236	0.3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328	0.4	325	0.4	324	0.4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230	0.3	229	0.3	210	0.3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15	0.0	23	0.0	26	0.0
		태권도 교육기관	1,866	2.5	799	1.0	1,237	1.5
	스포츠 교육기관	무술 교육기관	414	0.5			443	0.5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157	0.2	959	1.2	1,144	1.4
	스포츠 게임 개발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3,367	4.5	3,811	4.9	3,388	4.2
	<u> </u>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373	0.5	429	0.5	344	0.4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1,938	2.6	1,949	2.5	1,990	2.5
※ 괄호(	)아이 수자는 체유?	V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 괄호( )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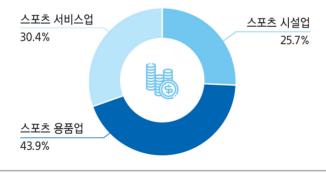
◆ 매출액 비중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을 포함하는 스포츠 용품업이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4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매출액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스포츠 시설업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3] '17~'19년 사업종류별 매출액

(단위: 십억원%)

			201	7년	201	8년	201	증감률	
		구 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2018년 대비)
	스	포츠 시설업	17,544	23.5	19,849	25.4	20,748	25.7	4.5
	스포츠 용품업		34,011	45.5	34,371	44.0	35,405	43.9	3.0
	스포츠	체육진흥 투표권 포함	23,141	31.0	23,847	30.5	24,532	30.4	2.9
,	서비스업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19,190	-	19,383	_	19,428	-	0.2
	하게	체육진흥 투표권 포함	74,696	100.0	78,067	100.0	80,684	100.0	3.4
	합계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70,745	-	73,603	-	75,581	-	2.7

## [그림 Ⅲ-1] 사업종류별 매출액 비율



## 2.2 조직형태별 매출액 현황4)

- ◆ 조직형태별 매출액은 회사법인이 54.8%로 스포츠산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인사업체(28.0%), 회사이외 법인(15.5%)순으로 나타남
- 2018년 대비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37.4% 증가한 반면 회사법인과 회사이외 법인의 매출 비중은 각각 6.3%,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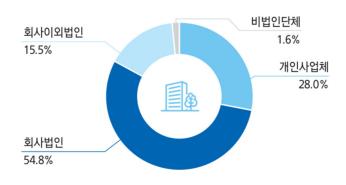
#### [표 Ⅲ-4] '17~'19년 조직형태별 매출액

(단위: 십억원%)

	201	7년	201	8년	201	증감률	
구 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2018년 대비)
개인사업체	18,384	24.6	16,453	21.1	2,2610	28.0	37.4
회사법인	42,168 (38,218)	56.5	47,223 (42,759)	60.5	4,4254 (39,150)	54.8	-6.3
회사이외 법인	13,411	18.0	13,474	17.3	12,526	15.5	-7.0
비법인단체	732	1.0	917	1.2	1,295	1.6	41.2
합 계	74,696 (70,745)	100.0	78,067 (73,603)	100.0	80,684 (75,581)	100.0	3.4

※ 괄호( )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 [그림 Ⅲ-2] 조직형태별 매출액 비율



<sup>4) 2019</sup>년 기준 조사의 조직형태별 자료는 표본설계시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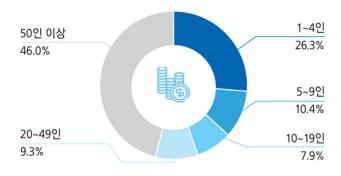
- ◆ 종사자 규모별로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이상의 사업체 매출액이 전체의 4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4인 사업체 26.3%, 5~9인 사업체 10.4%의 비중을 보임
-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률을 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매출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49인 사업체의 매출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5] '17~'19년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매출액 (비중)								
구 분	2017년	비중	2018년	비중	2019년	비중	(2018년 대비)			
1~4인	15,922	21.3	17,217	22.1	21,250	26.3	23.4			
5~9인	6,329	8.5	6,607	8.5	8,429	10.4	27.6			
10~19인	5,601	7.5	5,951	7.6	6,357	7.9	6.8			
20~49인	7,735	10.4	10,126	13.0	7,495	9.3	-26.0			
50인 이상	39,109 (35,159)	52.4	38,166 (33,702)	48.9	37,153 (32,050)	46.0	-2.7			
합 계	74,696 (70,745)	100.0	78,067 (73,603)	100.0	80,684 (75,581)	100.0	3.4			

### [그림 Ⅲ-3]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비율



## 2.4 지역별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

- ◆ 지역별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경기도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스포츠 서비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지역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매출액이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Ⅲ-6] '19년 지역별 사업종류별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구 분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	서비스업	합계	
↑ 군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서울특별시	2,567	18.1	15,640	17.0	12,121 (7,017)	20.6	30,328	18.5
부산광역시	1,289	6.2	3,003	7.7	994	7.2	5,285	6.9
대구광역시	555	4.4	993	5.4	419	5.5	1,967	5.1
인천광역시	702	5.2	1,536	4.5	638	4.9	2,876	4.9
광주광역시	290	2.8	782	2.6	541	3.3	1,613	2.9
대전광역시	383	2.8	834	2.9	530	3.0	1,746	2.9
울산광역시	325	2.6	309	2.1	174	2.2	808	2.4
세종특별자치시	97	0.4	32	0.3	33	0.6	161	0.4
경기도	6,751	24.3	7,249	24.6	6,931	24.1	20,931	24.3
강원도	1,785	4.3	395	4.4	168	3.1	2,348	4.0
충청북도	887	3.7	625	2.9	233	2.9	1,746	3.2
충청남도	556	4.2	539	4.3	554	3.5	1,650	4.0
전라북도	502	3.5	668	4.0	231	3.4	1,400	3.6
전라남도	724	3.7	499	3.8	175	2.9	1,398	3.5
경상북도	1,233	5.6	712	5.3	264	4.5	2,209	5.2
경상남도	1,277	6.5	1,415	6.8	362	6.4	3,054	6.6
제주특별자치도	827	1.6	173	1.5	165	1.9	1,164	1.6
합계	20,748	100.0	35,405	100.0	24,532 (19,428)	100.0	80,864	100.0

※ 괄호( )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 2.5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

- ◆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사업체들이 전체 사업체의 44.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1~5억 미만인 사업체 41.4%, 5~10억 미만 7.3% 등의 순임
-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체는 7,245개로 전체 사업체의 6.9% 수준으로 추정됨

### [표 Ⅲ-7] '17~'19년 매출구간별 사업체 현황

(단위:개%)

구 분 모집단		1억 미만		1억 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100억 이상			
ᅮᇎ	현황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2017년	101,207	55,448	54.8	31,459	31.1	8,098	8.0	4,831	4.8	572	0.6	798	0.8
2018년	103,145	50,186	48.7	40,373	39.1	6,012	5.8	4,993	4.8	660	0.6	922	0.9
2019년	105,445	46,801	44.4	43,678	41.4	7,722	7.3	5,620	5.3	699	0.7	926	0.9

#### 3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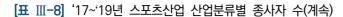
## 3.1 사업종류별 종사자 현황

◆ 전체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총 44만 9천명으로 나타남. 세세분류별로는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이 3만 8천 3백명으로 전체 산업의 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스포츠 의류 소매업(8.4%),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6.1%) 등의 순임

[표 Ⅲ-8] '17~'19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 수

(단위: 백명%)

	_	7H	201	7년	2018	8년	2019	9년
	_	분	종사자 수	비중	주 제사종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전	첫 체	4,235	100.0	4,346	100.0	4,490	100.0
		실내 경기장 운영업	16	0.4	13	0.3	14	0.3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25	0.6	21	0.5	22	0.5
		경주장 운영업	40	0.9	69	1.6	65	1.4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69	4.0	164	3.8	161	3.6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347	8.2	373	8.6	383	8.5
	ᆉᅛᄮᄑᆕ	수영장 운영업	54	1.3	67	1.5	70	1.6
		볼링장 운영업	40	0.9	38	0.9	42	0.9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223	5.3	255	5.9	254	5.6
스포츠	시크 正6日	골프연습장 운영업	239	5.6	232	5.3	254	5.7
스포스 시설업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4	0.1	5	0.1	5	0.1
시크ㅂ		체육공원 운영업	11	0.3	11	0.2	11	0.3
		기원 운영업	12	0.3	11	0.3	11	0.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286	6.8	254	5.8	266	5.9
		스키장 운영업	88	2.1	89	2.0	89	2.0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18	0.4	18	0.4	17	0.4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30	0.7	25	0.6	27	0.6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79	1.9	94	2.2	106	2.4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72	1.7	69	1.6	64	1.4
	스포스 신달합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22	0.5	70	1.6	58	1.3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26	0.6	29	0.7	30	0.7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5	0.6	26	0.6	25	0.6
	O도 미 경기Q표	자전거 제조업	4	0.1	9	0.2	9	0.2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0	0.7	27	0.6	26	0.6
	세포법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7	0.2	7	0.2	8	0.2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_	_	2	0.1	4	0.1
스포츠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5	0.1	6	0.1	5	0.1
용품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171	4.0	122	2.8	113	2.5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0	0.2	9	0.2	9	0.2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5	0.1	6	0.1	6	0.1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3	0.1	2	0.1	2	0.0
	ᄾᄑᅔᄀᄖᅡᄆᆝᅬᄖᅡ	스포츠 가방 제조업	8	0.2	7	0.2	7	0.1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 신발 제조업	31	0.7	32	0.7	29	0.6
	세포법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13	0.3	14	0.3	13	0.3



		7 <b>6</b>	201	7년	201	8년	2019년	
		구분	종사자 수	비중	수 재사종	비중	수 재사종	비중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127	3.0	151	3.5	156	3.5
		자전거 도매업	15	0.4	12	0.3	11	0.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스포츠 의류 도매업	63	1.5	63	1.4	64	1.4
	_ "5	스포츠 가방 도매업	3	0.1	2	0.1	2	0.0
		스포츠 신발 도매업	22	0.5	23	0.5	24	0.5
스포츠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270	6.4	269	6.2	262	5.8
용품업		자전거 소매업	59	1.4	55	1.3	53	1.2
	운동 및 경기용품	스포츠 의류 소매업	355	8.4	352	8.1	377	8.4
	소매업	스포츠 가방 소매업	1	0.0	1	0.0	1	0.0
		스포츠 신발 소매업	75	1.8	68	1.6	63	1.4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31	0.7	30	0.7	38	0.8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35	0.8	35	0.8	35	0.8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22	0.5	19	0.4	20	0.4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3	0.1	3	0.1	3	0.1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2	1.2	48	1.1	50	1.1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에이전트업	2	0.0	2	0.0	2	0.1
		회원권 대행 판매업	7	0.2	6	0.1	6	0.1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1	0.0	1	0.0	2	0.0
스포츠 서비스업		기타스포츠 마케팅업	85	2.0	83	1.9	80	1.8
시미스립		스포츠 신문 발행업	3	0.1	3	0.1	3	0.1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3	0.1	4	0.1	3	0.1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_	-	-	-	_	-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_	_	-	-	_	_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6	0.1	6	0.1	5	0.1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5	0.1	6	0.1	6	0.1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	0.1	2	0.0	3	0.1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1	0.0	2	0.0	2	0.0
		태권도 교육기관	462	10.9	212	4.9	267	6.0
	스포츠 교육기관	무술 교육기관	402	10.9	89	2.1	107	2.4
스포츠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49	1.2	247	5.7	272	6.1
	스포츠 게임 개발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61	3.8	180	4.1	176	3.9
	및 공급업 -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4	0.1	17	0.4	13	0.3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192	4.5	180	4.1	181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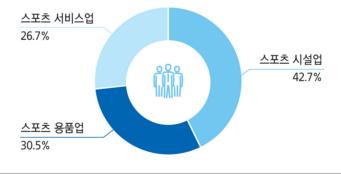
- ◆ 사업종류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장 운영업,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스포츠 건설업 등이 포함된 스포츠 시설업이 19만 2천명으로 전체 산업의 42.7%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종류별 종사자는 전체 산업 기준으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스포츠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8.2%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다음으로 스포츠 시설업(2.0%), 스포츠 용품업(0.8%) 순임

### [표 Ⅲ-9] '17~'19년 사업종류별 종사자 수

(단위 : 천명 %)

구 분	201	7년	201	8년	201	증감률 (2018년	
T 世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2018년 대비)
스포츠 시설업	178	41.9	188	43.2	192	42.7	2.0
스포츠 용품업	140	33.0	136	31.3	137	30.5	0.8
스포츠 서비스업	106	25.1	111	25.5	120	26.7	8.2
합 계	424	100.0	435	100.0	449	100	3.3

### [그림 Ⅲ-4] 사업종류별 종사자 수 비율



## 3.2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현황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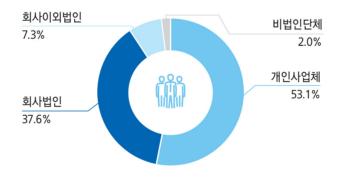
◆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23만 8천명으로 전체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회사법인이 37.6%, 회사이외 법인이 7.3%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Ⅲ-10] '17~'19년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천명 %)

구 분	201	7년	201	8년	2019년		
ㅜ 푼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개인사업체	229	54.1	219	50.5	238	53.1	
회사법인	156	36.8	167	38.4	169	37.6	
회사이외 법인	31	7.4	39	8.9	33	7.3	
비법인단체	7	1.7	10	2.2	9	2.0	
합 계	424	100.0	435	100.0	449	100.0	

[그림 Ⅲ-5]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비율



<sup>5) 2019</sup>년 기준 조사의 조직형태별 자료는 표본설계시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함

## 3.3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현황

- ◆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1~4인 사업체 수에 종사하는 인원이 21만 9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9만 8천명(21.7%)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5~9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18년 대비 15.8%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1] '17~'19년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단위 : 천명 %)

	201	7년	201	8년	201	증감률	
구 분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2018년 대비)
1~4인	193	45.5	208	47.9	219	48.7	5.1
5~9인	54	12.9	49	11.2	57	12.6	15.8
10~19인	41	9.7	33	7.7	38	8.4	14.5
20~49인	33	7.8	38	8.7	38	8.5	0.6
50인 이상	102	24.2	107	24.5	98	21.7	-8.8
합 계	424	100.0	435	100.0	449	100.0	3.3

### [그림 Ⅲ-6]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비율





- ◆ 전체 스포츠산업의 종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사자는 상용 근로자로 26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57.9% 수준임.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 10만 1천명(22.6%), 임시 및 일용 근로자 6만 5천명(14.5%) 순으로 조사됨
-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스포츠 시설업이 40.4%로 가장 높고, 스포츠 용품업(32.1%), 스포츠 서비스업(27.5%) 순으로 조사됨

[표 Ⅲ-12] '19년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단위 : 천명 %)

구 분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192	42.7	105	40.4	36	55.1	41	40.6	8	42.1	2	45.2
스포츠 용품업	137	30.5	83	32.1	14	21.7	31	31.0	7	40.0	1	20.4
스포츠 서비스업	120	26.7	72	27.5	15	23.2	29	28.4	3	17.9	1	34.4
합 계	449	100.0	260	100.0	65	100.0	101	100.0	18	100.0	4	100.0

## 3.5 지역별 사업종류별 종사자 수 현황

- ◆ 지역별 사업종류별로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스포츠 시설업에서 종사하는 근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종사하는 인원이 11만 6천명, 서울특별시(10만 5천명) 등의 순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종사자가 2천명 수준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표 Ⅲ-13] '19년 지역별 사업종류별 종사자 수

(단위 : 천명 %)

구 분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	서비스업	합.	계
те	종사자 수	비중						
서울특별시	32	16.9	38	27.5	35	29.3	105	23.4
부산광역시	10	5.2	14	10.1	7	8.4	31	6.9
대구광역시	6	3.3	7	5.1	4	4.9	17	3.8
인천광역시	7	3.7	6	4.5	4	5.1	18	3.9
광주광역시	6	2.9	2	1.8	3	3.2	11	2.5
대전광역시	4	2.2	3	2.5	3	2.2	10	2.3
울산광역시	4	1.9	2	1.8	2	1.6	8	1.8
세종특별자치시	1	0.4	0	0.1	1	0.4	2	0.4
경기도	51	26.8	28	20.7	36	22.2	116	25.8
강원도	15	7.8	4	3.0	3	1.9	22	4.9
충청북도	6	3.1	3	2.3	3	1.7	12	2.6
충청남도	7	3.9	4	2.9	3	2.2	15	3.3
전라북도	8	4.1	4	3.1	3	1.9	15	3.3
전라남도	7	3.8	5	3.3	3	1.5	14	3.2
경상북도	10	5.4	5	3.7	3	2.0	19	4.2
경상남도	12	6.4	9	6.5	6	3.2	27	5.9
제주특별자치도	4	2.3	1	1.0	2	1.1	8	1.7
합 계	192	100.0	137	100.0	120	100.0	449	100.0

## 4 사업실적

## 4.1 스포츠산업 전체 실적

- ◆ 스포츠산업 매출액 80조 6,840억 원 중 영업비용 73조 7,350억 원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6조 9,490억 원으로 8.6%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7%로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임. 2018년 기준 내수 비중 또한 97.9%로 18년과 유사한 수준임

[표 Ⅲ-14] '18~'19년 20개 세분류별 실적 현황

(단위: 십억원%)

	MAS	2018년						2019년					
대분류	세분류	내수	-액	영업	비용	영업	이익	내수	-액	영업	비용	영업(	기익
	경기장 운영업	3,754	4.9	3,783	5.3	-30	-5	3,557	4.5	3,365	4.6	192	2.8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6,972	9.1	6,038	8.4	934	-3,123	7,605	9.6	6,655	9.0	950	13.7
스포츠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457	8.4	5,732	8.0	725	78	6,942	8.8	6,259	8.5	683	9.8
시설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153	0.2	131	0.2	22	3	208	0.3	157	0.2	51	0.7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	478	0.6	413	0.6	65	298	612	0.8	510	0.7	102	1.5
	스포츠 건설업	2,030	2.7	1,943	2.7	92	142	1,820	2.3	1,690	2.3	134	1.9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865	2.4	1,962	2.7	160	175	2,049	2.6	2,034	2.8	113	1.6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4,046	5.3	4,056	5.7	324	202	3,514	4.5	3,814	5.2	450	6.5
스포츠	스포츠기방 및 신발 제조업	990	1.3	1,084	1.5	60	19	993	1.3	1,017	1.4	98	1.4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10,980	14.4	10,762	15.1	915	1,519	11,523	14.6	11,212	15.2	863	12.4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14,883	19.5	13,275	18.6	1,635	179	15,497	19.6	14,253	19.3	1,395	20.1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138	0.2	107	0.1	31	2	155	0.2	137	0.2	17	0.3
	스포츠 경기업	740	1.0	757	1.1	-16	-53	752	1.0	785	1.1	-27	-0.4
	스포츠 베팅업	11,816 (7,352)	15.5	11,453 (6,989)	16.0	363	-2,227	12,247 (7,143)	15.5	11,938 (6,839)	16.2	309 (115)	4.4
	스포츠 마케팅업	2,022	2.6	1,907	2.7	115	32	2,095	2.7	1,980	2.7	115	1.6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미디어업	885	1.2	876	1.2	9	8	860	1.1	829	1.1	31	0.5
시미스답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23	0.0	40	0.1	-17	-195	26	0.0	32	0.0	-6	-0.1
	스포츠 교육기관	2,171	2.8	1,549	2.2	622	-3,626	2,824	3.6	2,067	2.8	757	10.9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4,113	5.4	3,822	5.3	418	67	3,601	4.6	3,140	4.3	592	8.5
	스포츠 여행업	1,949	2.5	1,795	2.5	154	37	1,990	2.5	1,862	2.5	128	1.8
	합 계	76,466 (72,002)	100.0	71,485 (67,021)	100.0	6,582 (6,582)	100.0	78,868 (73,765)	100.0	73,735 (73,735)	100.0	6,949 (6,948)	100.0

※ 괄호( )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 ◆ 전년 대비 증감률은 매출액이 3.4%, 내수는 3.1% 영업비용은 3.1%, 영업이익은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 스포츠산업 매출액 구성은 19년 기준 내수 매출액이 78조 8,680억 원(97.7%)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1조 8,160억 원(2.3%)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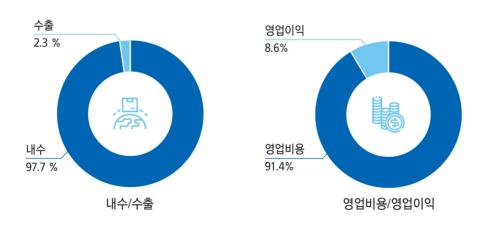
[표 Ⅲ-15] '15~'19년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단위 : 십억원 %)

	매출액				영업이익	
구 분	메돌격 (A)	내수	수출	영업비용	(B)	이익률 (B)/(A)
2015년도	68,350	67,340	1,314	62,534	5,912	8.5
	(65,145)	(64,135)	(1,314)	(59,329)	(5,912)	(9.0)
2016년도	72,608	71,318	1,290	66,394	6,214	8.6
	(68,432)	(67,142)	(1,290)	(62,218)	(6,214)	(9.1)
2017년도	74,696	73,350	1,346	68,565	6,131	8.2
	(70,745)	(69,399)	(1,346)	(64,614)	(6,131)	(8.7)
2018년도	78,067	76,466	1,601	71,485	6,582	8.4
	(73,603)	(72,002)	(1,601)	(67,021)	(6,582)	(8.9)
2019년도	80,684	78,868	1,816	73,735	6,949	8.6
	(75,581)	(73,765)	(1,816)	(68,637)	(6,948)	(9.2)
전년대비 증감률	3.4 (2.7)	3.1 (2.4)	13.4 (13.4)	3.1 (2.4)	5.6 (5.6)	_

<sup>※</sup> 괄호( )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 [그림 Ⅲ-7]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비율





- ◆ 사업종류별로는 스포츠 시설업의 내수 매출 비중이 100.0%로 가장 높고 스포츠 서비스업(99.4%), 스포츠 용품업(95.3%) 순임
- 금액별로는 스포츠 용품업에서 내수 매출액(33조 7,300억)과 수출액(1조 6,740억) 모두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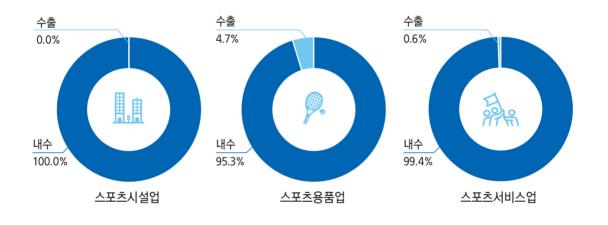
[표 Ⅲ-16] '17~'19년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단위: 십억원)

		매출액							
구 분	메돌객				내수		수출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스포츠 시설업	17,544	19,849	20,748	17,541	19,845	20,744	2	4	4
스포츠 용품업	34,011	34,371	35,405	32,784	32,902	33,730	1,227	1,470	1,674
스포츠 서비스업	23,141 (19,190)	23,847 (19,383)	24,532 (19,428)	23,024 (19,074)	23,719 (19,255)	24,394 (19,290)	117 (117)	127 (127)	138 (138)

<sup>※</sup> 괄호( )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 [그림 Ⅲ-8] 사업종류별 내수·수출 실적 비율



## 4.3 사업종류별 영업실적

- ◆ 스포츠산업의 사업종류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스포츠 용품업이 35조 4,050억으로 가장 높고 스포츠 서비스업, 시설업 순임
- 영업이익률은 스포츠 시설업이 10.2%로 가장 높고 스포츠 용품업(8.3%), 스포츠 서비스업 (7.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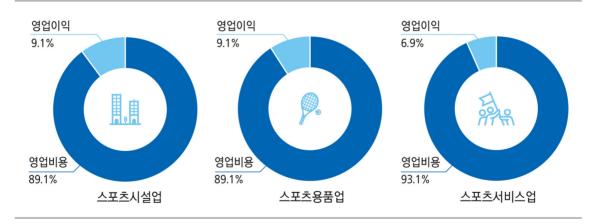
#### [표 Ⅲ-17] '18~'19년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

(단위: 십억원%)

구 분	매출 ( <i>A</i>		영업비용		영업 (E		이익률 (B)/(A)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스포츠 시설업	19,849	20,748	18,041	18,637	1,808	2,111	9.1	10.2	
스포츠 용품업	34,371	35,405	31,246	32,467	3,125	2,938	9.1	8.3	
스포츠 서비스업	23,847 (19,383)	24,532 (19,428)	22,198 (17,734)	22,632 (17,534)	1,649 (1,649)	1,900 (1,899)	6.9 (8.5)	7.7 (9.8)	

※ 괄호( )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 [그림 Ⅲ-9]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





◆ 스포츠산업의 지역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서울특별시가 30조 3,280억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 20조 9,310억 순임. 반면 영업이익은 충청북도가 14.8%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각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8] '19년 지역별 영업실적

(단위 : 십억원, %)

구 분	매출액 (A)	영업비용	영업이익 (B)	이익률 (B)/(A)
서울특별시	30,328 (25,224)	28,350 (23,252)	1,978 (1,977)	6.5 (7.8)
부산광역시	5,285	4,934	351	6.6
대구광역시	1,967	1,768	199	10.1
인천광역시	2,876	2,601	275	9.6
광주광역시	1,613	1,478	135	8.4
대전광역시	1,746	1,588	158	9.1
울산광역시	808	727	81	10.0
세종특별자치시	161	142	20	12.2
경기도	20,931	18,802	2,130	10.2
강원도	2,348	2,207	141	6.0
충청북도	1,746	1,487	258	14.8
충청남도	1,650	1,454	196	11.9
전라북도	1,400	1,200	201	14.3
전라남도	1,398	1,198	200	14.3
경상북도	2,209	1,953	256	11.6
경상남도	3,054	2,753	301	9.9
제주특별자치도	1,164	1,096	68	5.9

<sup>※</sup> 괄호( )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 5 인력충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 5.1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현황

◆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현황은 모든 업종에서 인력충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스포츠 서비스업에서 인력충원 규모가 19년 대비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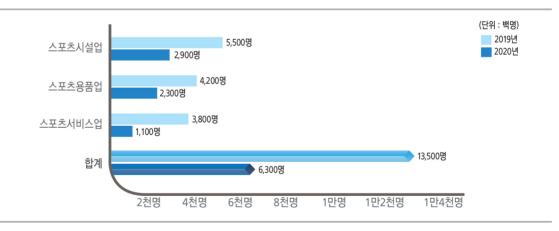
#### [표 Ⅲ-19] 사업 종류별 인력충원

(단위: 백명)

	7 8	인력충원*				
	구 분	2019년 2020				
	합 계	135	63			
	스포츠 시설업	55	29			
사업종류	스포츠 용품업	42	23			
	스포츠 서비스업	38	11			

\*인력충원: 해당년도에 신규 또는 보충된 상용종사자 수(퇴직자 결원 보충 포함)

### [그림 Ⅲ-10] 사업 종류별 인력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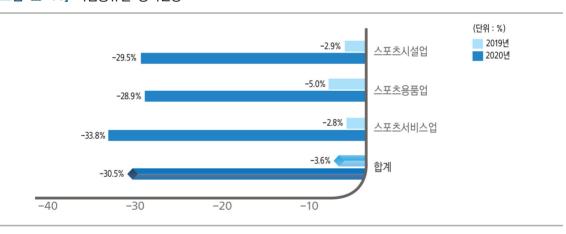
- ◆ 사업종류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2019년은 전 업종에서 -3.6%가량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20년에는 -30.5%가량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함
- 특히 스포츠 서비스업에서 2020년 경기가 -33.8%로 타 업종 대비 크게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스포츠 용품업과 시설업 또한 -30%에 가깝게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함

#### [표 Ⅲ-20]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단위:%)

	구 분	사업체 경기전망				
	т ш	2019년	2020년			
	합 계	-3.6	-30.5			
	스포츠 시설업	-2.9	-29.5			
사업종류	스포츠 용품업	-5.0	-28.9			
	스포츠 서비스업	-2.8	-33.8			

#### [그림 Ⅲ-11]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 6 특성항목

## 6.1 스포츠 용품업 내수 및 수입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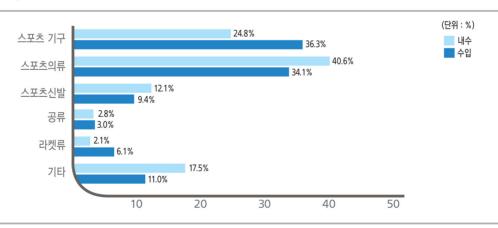
- ◆ 2019년 스포츠용품업의 내수판매 매출은 3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내수가 32조 1,130억 원, 수출은 1조 6,170억 원으로 내수가 95.2% 수준으로 내수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스포츠 의류의 내수(매출) 비중이 4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포츠 기구(24.8%), 스포츠 신발(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Ⅲ-21] '17~'19년 스포츠 용품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십억원 %)

						비 중			
구	분	금액	스포츠 음료	스포츠 기구	스포츠 의류	스포츠 신발	공 류	라켓류	기타
201713	내수	32,785	0.1	-	43.0	12.1	3.3	3.5	38.0
2017년	수입	1,513	0.0	_	35.8	17.4	2.5	2.6	41.5
201013	내수	32,703	0.1	_	39.9	13.3	3.3	2.6	40.8
2018년	수입	1,375	0.0	-	34.4	12.0	3.8	3.7	46.1
2019년	내수	32,113	_	24.8	40.6	12.1	2.8	2.1	17.5
2019년	수입	1,617	_	36.3	34.1	9.4	3.0	6.1	11.0

#### [그림 Ⅲ-12] 스포츠 용품업 상품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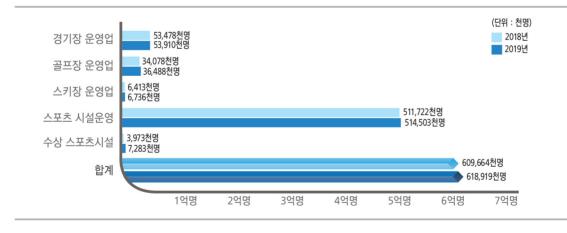
- ◆ 스포츠 시설업의 평균 영업 개월 수는 12개월로 작년과 동일하며, 연간 이용 인원 수는 6억 1,892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포츠 시설업의 연간 이용인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의 이용인원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22] '17~'19년 스포츠 시설업 연간 영업 개월 수 및 이용인원

(단위:월,천명%)

7 8	평균 9	영업 개월	수(월)	연간	연간 이용인원 수(천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		
합 계	12	12	12	591,628(100.0)	609,664(100.0)	618,919(100)	1.5		
경기장 운영업	12	12	12	48,466(8.2)	53,478(8.6)	53,910(8.7)	0.8		
골프장 운영업	12	12	12	42,879(7.2)	34,078(5.5)	36,488(5.9)	7.1		
스키장 운영업	6	11	6	7,147(1.2)	6,413(1.0)	6,736(1.1)	5.0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12	12	12	488,830(82.6)	511,722(81.9)	514,503(83.1)	0.5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9	10	8	4,306(0.7)	3,973(0.6)	7,283(1.2)	83.3		

#### [그림 Ⅲ-13] 스포츠 시설업 연간 이용 인원 비교



## 6.3 스포츠 서비스업 고객(소비자) 연령별 매출액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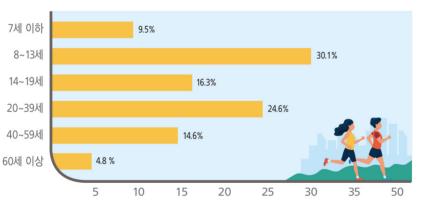
◆ 스포츠 서비스업의 고객(소비자) 연령별 매출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8~13세 연령대에 매출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39세(24.6%), 14~19세(16.3%) 등의 순임

[표 Ⅲ-23] '17~'19년 스포츠 서비스업 고객(소비자)연령별 매출액 비중

(단위 : %)

구분	7세 이하	8~13세	14~1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2017년	9.6	36.4	15.4	17.7	14.6	6.1
2018년	9.6	32.8	15.3	21.1	14.9	6.3
2019년	9.5	30.1	16.3	24.6	14.6	4.8

[그림 Ⅲ-14] 고객(소비자) 연령별 매출액 비중



(단위:%)

## 7 스포츠산업 현안 조사 결과

## 7.1 전체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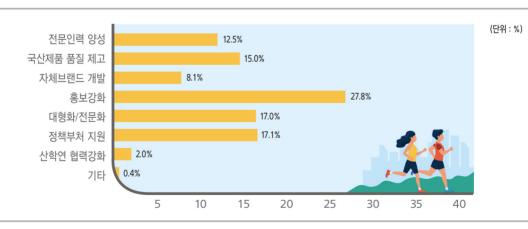
◆ 스포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홍보 강화가 27.8%로 가장 높고, 정책부처 지원(17.1%), 대형화·전문화(17.0%) 등의 순임

### [표 Ⅲ-24] '15~'19년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단위:%)

구분	전문인력 양성	국산제품 품질제고	자체 브랜드 개발	홍보 강화	대형화 전문화	정책부처 지원	산학연 협력강화	기타
2015년	14.8	8.9	8.4	29.6	8.5	26.5	1.1	2.4
2016년	12.5	9.9	5.5	38.7	6.7	23.8	1.3	1.6
2017년	14.3	12.2	8.4	36.7	8.9	15.0	0.7	3.7
2018년	15.0	10.1	8.2	35.3	8.9	20.1	1.6	0.7
2019년	12.5	15.0	8.1	27.8	17.0	17.1	2.0	0.4

### [그림 Ⅲ-15]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부문



- 지역별로는 충청북도의 홍보 강화 응답이 4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 (32.5%), 경기도(32.1%) 등의 순임
- 정책부처 지원 응답은 세종특별자치시가 45.0%로 가장 높고, 대형화·전문화 응답은 대구광역시가 4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Ⅲ-25] 지역별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단위: %)

								(LTI · 70)	
구분	전문인력 양성	국산제품 품질제고	자체 브랜드 개발	홍보 강화	대형화 전문화	정책부처 지원	산학연 협력강화	기타	
서울특별시	10.8	30.0	6.2	22.3	9.3	16.0	5.2	0.2	
부산광역시	6.5	6.8	16.2	25.5	39.0	4.9	0.9	0.1	
대구광역시	6.5	7.5	12.4	21.8	42.2	8.4	1.0	0.1	
인천광역시	9.7	26.7	7.6	28.0	11.9	14.0	1.9	0.2	
광주광역시	21.5	9.9	6.1	24.0	11.0	22.0	4.3	1.3	
대전광역시	21.9	6.7	5.0	27.3	6.2	30.6	2.2	0.0	
울산광역시	5.6	4.0	10.3	23.1	20.1	36.7	0.1	0.1	
세종특별자치시	12.4	4.4	2.0	24.4	9.5	45.0	1.0	1.1	
경기도	16.0	14.8	9.9	32.1	13.7	12.6	0.7	0.1	
강원도	13.9	10.4	7.1	32.5	8.9	24.5	1.0	1.7	
충청북도	15.7	7.2	2.7	42.3	12.4	17.8	1.7	0.2	
충청남도	11.4	6.4	3.6	30.4	10.4	34.1	2.2	1.5	
전라북도	21.2	5.4	5.2	24.7	8.8	32.7	1.6	0.4	
전라남도	13.6	3.6	0.9	30.1	10.0	39.8	1.8	0.2	
경상북도	7.7	13.8	9.8	29.3	24.8	13.5	0.3	0.9	
경상남도	7.3	13.6	8.1	25.8	35.2	8.8	1.1	0.0	
제주특별자치도	18.8	13.4	6.8	28.6	6.4	20.4	3.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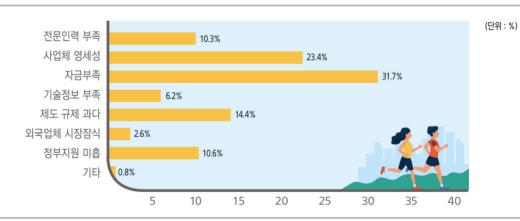
• 육성발전 장애요인은 자금부족이 31.7%로 가장 높고, 사업체 영세성(23.4%), 제도규제 과다 (14.4%) 등의 순임

#### [표 Ⅲ-26] '15~'19년 육성발전 장애요인

(단위:%)

구분	전문인력 부족	사업체 영세성	자금부족	기술정보 부족	제도규제 과다	외국업체 시장잠식	정부지원 미흡	기타
2015년	7.9	19.0	22.7	5.3	16.4	4.6	12.7	11.4
2016년	7.5	21.1	22.6	4.0	23.1	4.3	14.4	3.1
2017년	14.5	23.8	21.9	9.6	11.0	2.8	10.3	6.2
2018년	12.9	20.8	22.5	9.8	15.9	3.5	12.6	2.1
2019년	10.3	23.4	31.7	6.2	14.4	2.6	10.6	0.8

#### [그림 Ⅲ-16]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 지역별 육성발전 장애요인으로는 자금 부족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 영세성 응답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서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 [표 Ⅲ-27] 지역별 육성발전 장애요인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부족	사업체 영세성	자금부족	기술정보 부족	제도규제 과다	외국업체 시장잠식	정부지원 미흡	기타
서울특별시	17.2	30.5	22.3	8.8	11.5	3.0	6.0	0.7
부산광역시	4.6	48.7	31.4	3.7	3.6	1.6	6.3	0.2
대구광역시	9.5	40.5	30.6	5.5	6.0	1.7	6.0	0.2
인천광역시	8.6	26.2	26.5	17.3	14.0	4.5	2.9	0.1
광주광역시	16.2	9.5	21.9	12.5	15.1	0.9	21.9	2.0
대전광역시	9.2	8.0	26.9	7.2	24.0	2.8	21.2	0.6
울산광역시	3.8	33.1	19.8	2.6	8.3	3.2	28.8	0.3
세종특별자치시	7.0	12.0	34.6	3.9	16.3	1.3	22.8	2.1
경기도	11.3	9.3	47.6	3.8	20.0	2.3	5.4	0.4
강원도	9.3	21.1	24.4	10.5	12.0	5.4	13.7	3.5
충청북도	6.4	15.0	29.7	5.8	26.7	0.9	14.3	1.3
충청남도	12.0	8.1	24.9	2.9	27.8	1.9	19.7	2.6
전라북도	9.9	8.1	31.0	4.2	20.5	0.7	23.5	2.0
전라남도	5.4	9.0	27.1	2.0	22.2	0.7	32.7	0.9
경상북도	6.7	43.1	25.4	3.8	4.4	3.3	12.6	0.7
경상남도	3.7	38.0	33.5	5.3	5.6	4.6	9.0	0.3
제주특별자치도	7.8	31.1	26.1	5.2	10.1	1.9	17.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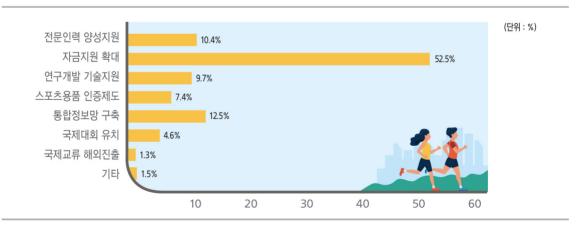
- ◆ 육성발전 지원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지원 확대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지원정책이 점차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스포츠 산업 특성상 영세한 업체의 범위가 워낙 넓고 업종도 다양해서 지속적인 정책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통합정보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표 Ⅲ-28] '15~'19년 육성발전 지원부문

(단위:%)

구분	전문인력 양성지원	자금지원 확대	연구개발 기술지원	스포츠 용품 인증제도	통합정보망 구축	국제대회 유치	국제교류 해외진출	기타
2015년	11.7	51.1	5.1	3.7	6.8	9.4	1.3	10.8
2016년	9.8	58.1	3.6	3.8	6.8	10.7	1.1	6.1
2017년	12.6	40.1	8.4	8.4	12.1	10.5	1.4	6.5
2018년	16.9	47.7	10.6	4.3	9.4	5.0	2.9	3.2
2019년	10.4	52.5	9.7	7.4	12.5	4.6	1.3	1.5

#### [그림 Ⅲ-17]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



◆ 지역별 육성발전 지원부문으로는 자금지원 확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등의 원인으로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표 Ⅲ-29] 지역별 육성발전 지원부문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양성지원	자금지원 확대	연구개발 기술지원	스포츠 용품 인증제도	통합정보망 <del>구축</del>	국제대회 유치	국제교류 해외진출	기타
서울특별시	15.9	34.0	16.7	15.8	8.4	7.2	0.9	1.1
부산광역시	4.8	72.1	5.5	4.4	10.5	2.5	0.1	0.2
대구광역시	10.8	64.4	6.4	5.6	9.3	3.2	0.3	0.0
인천광역시	18.8	29.1	17.2	17.7	11.5	3.4	1.9	0.4
광주광역시	12.2	56.8	8.5	2.7	7.1	10.4	0.7	1.6
대전광역시	11.2	63.7	3.3	3.3	9.3	3.9	2.1	3.2
울산광역시	3.3	62.6	2.2	2.3	23.3	5.6	0.5	0.1
세종특별자치시	8.6	77.1	1.6	1.2	2.7	7.2	0.3	1.2
경기도	9.8	49.3	12.6	5.8	17.2	2.9	1.4	1.1
강원도	9.6	43.5	7.8	9.8	13.2	8.3	3.0	4.7
충청북도	7.7	51.4	6.5	2.0	22.1	6.0	2.0	2.3
충청남도	8.8	66.3	2.8	1.6	9.2	4.9	1.8	4.7
전라북도	5.5	63.8	5.5	2.7	13.1	4.3	0.7	4.3
전라남도	6.0	70.6	2.7	1.7	8.4	4.0	1.2	5.3
경상북도	9.3	60.9	6.1	3.7	14.3	2.2	2.9	0.7
경상남도	5.9	67.1	4.5	6.9	11.0	3.9	0.8	0.0
제주특별자치도	14.6	49.4	3.7	5.9	11.4	8.0	2.4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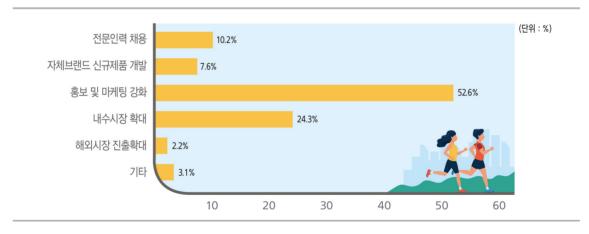
• 매출 증대방안으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내수시장 확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스포츠산업 매출 증대를 위하여 각 기업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 및 지원하여 스포츠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표 Ⅲ-30] '15~'19년 스포츠산업 매출증대 방안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채용	자체브랜드 신규제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내수시장 확대	해외시장 진출확대	기 타
2015년	6.5	5.8	56.7	24.8	1.1	5.0
2016년	3.4	4.8	58.9	30.1	1.3	1.5
2017년	11.0	11.3	49.1	18.8	1.9	7.9
2018년	11.6	8.1	56.2	19.9	2.2	2.0
2019년	10.2	7.6	52.6	24.3	2.2	3.1

#### [그림 Ⅲ-18] 스포츠산업 매출증대 방안



• 지역별 매출 증대방안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31] 지역별 매출 증대방안

(단위 : %)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채용	자체브랜드 신규제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내수시장 확대	해외시장 진출확대	기 타
서울특별시	10.2	14.5	27.4	42.3	4.9	0.6
부산광역시	2.9	3.8	69.5	23.5	0.2	0.3
대구광역시	7.9	4.0	66.8	20.8	0.4	0.1
인천광역시	9.1	19.0	29.5	36.0	6.1	0.3
광주광역시	18.6	5.3	45.3	17.7	2.7	10.3
대전광역시	9.7	3.3	60.0	13.9	1.3	11.8
울산광역시	1.7	6.1	66.1	25.1	0.1	0.9
세종특별자치시	7.8	0.9	78.2	7.3	0.6	5.2
경기도	14.8	8.1	57.4	17.0	2.0	0.7
강원도	9.0	3.4	55.1	24.4	1.6	6.5
충청북도	14.3	3.1	59.2	17.9	2.2	3.2
충청남도	10.7	2.1	55.7	14.3	0.7	16.5
전라북도	10.5	3.3	53.2	15.5	2.2	15.5
전라남도	11.6	2.7	57.8	16.2	0.6	11.1
경상북도	7.8	8.8	65.9	16.2	1.2	0.1
경상남도	3.0	1.3	65.2	30.3	0.1	0.1
제주특별자치도	7.5	7.2	58.2	18.9	2.1	6.2

### 8 성과 및 제언

#### 8.1 성과

#### ◆ 국가승인통계 유지

통계법 제18조 1항 및 제2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13021호)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적용 유지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는 2018년 기준 조사 시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을 총 66개 세세분류로 진행

#### ◆ 모집단 보완 기준 적용 유지

- 2018년 기준 조사에 이어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스포츠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의 사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갱신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구성함
- 사업체별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의 3년차 적용을 통한, 명확하고 안정화된 모집단 구성 가능
- 스포츠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종의 모집단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표한 "2019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모집단을 보완함

#### ◆ 스포츠산업 전체 규모와 지역(광역시·도)별 결과 산출

• 2017년 기준 조사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로 스포츠산업 대분류 기준으로 공표 단위 확장

#### ◆ 조사결과 내검 및 자료처리

- 유사 통계자료, 행정자료, 경영공시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자료와 비교·검토, 수준점검을 통하여 자료의 일관성, 정합성, 정확성을 제고
- 내검지침서 작성, 자료 검증 보고서 작성 등 철저한 자료처리 수행
   ※ 조사자료 검증 및 수준분석을 위한 비교자료
  -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비교·검토
  - 기업 경영 정보 공시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와 비교·검토

#### ◆ 현장조사

- 복권발행업, 스키장운영업 등 사업체 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수 확보에 노력
- 2019년 기준 조사는 적정표본 확보(12,000개 이상)로 표본의 대표성 제고

#### ◆ 스포츠산업 통계체계 네트워크 구축

- 2019년 기준 조사는 전문 조사 기관인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의 협조로 통계 작성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는 표본을 효율적으로 확보함
- 표준지침(스포츠산업조사 조사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조사과정, 조사원교육, 자료처리 등 전반적인 조사체계 구축

#### 8.2 제언

#### ◆ 표본명부

- 동 조사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모집단이 정확하게 구축되어야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 가능하므로 향후 조사시에도 모집단 확보 및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명확한 모집단 구성을 위한 최신 모집단 보완 방법의 지속 적용 및 최신 모집단 자료 수집, 행정자료 등의 정확한 표본 추출틀이 작성 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2019년 기준 조사에서는 스포츠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종의 모집단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표한 "2019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의 모집단 보완을 위해서는 "2019 사행산업 관련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모집단을 추가 보완함
- 다만, 매년 판별조사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4개 업종(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스포츠 여행업)의 경우, 그 해의 산업 구조 및 사업체 실적의 변화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집단 구축을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모집단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들 업종의 경우 스포츠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매출액 등의 조사 자료 수집 시 애로사항이 있음

- 또한, 스포츠산업조사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의 표준산업분류를 근간으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를 적용하는 만큼 표준산업분류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의 변화를 고려하여 업종별, 지역별 시계열 분석시 좀 더 유연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이러한 외부 변화 요인을 줄이기 위해 스포츠산업을 구성하는 전체 사업체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스포츠산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의 산출 필요

- 현 스포츠산업조사에서 집계된 인력은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는 전체 인력을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보다 정책적이고 활용도 높은 결과산출을 위해서는 스포츠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만 별도 분리 하여 응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스포츠산업 조사모집단 포함여부 기준(매출액의 10.0% 이상)과 유사한 종사 인력의 스포츠산업 담당 비중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조사방법

- 조사기준과 사업체 회계기준의 차이에 따라 사업실적이 다르게 작성되어 총량 추정에 변수로 작용하므로 추후 조사 시 조사범위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
  - 정부기관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 수수료를 사업실적으로 조사

#### ◆ 조사결과 활용성 제고

• 스포츠산업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모수를 추정함에 따라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결과 활용시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공표단위를 조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光 然 为 为 外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 부록 1

- 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 2.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 3. 스포츠산업 관련 용어 정의
- 4. 조사표와 결산서의 관계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101010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10101	경기장 운영업	101010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1010103	경주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101020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20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010203	수영장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101 + == =	1010204	볼링장 운영업	91134	볼링장 운영업
	101	10102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205	당구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스포츠		ME EOB	101020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207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스포스 시설업	гон			1010208	체육공원 운영업	91292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1010209	기원 운영업	91293	기원 운영업
		10103	골프장 및	1010301	골프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10103	스키장 운영업	1010302	스키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10104	수상스포츠	1010401	낚시장 운영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10104	시설 운영업	1010499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0199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99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02			1020001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41226	조경 건설업
	<u>스포츠</u> 시설 건설업	10200	스 <u>포츠</u> 건설업	1020002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0040404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2010101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2010103	자전거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0101	운동 및 경기용품	2010104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0101	제조업	2010105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201			2010106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人꾸六	201 운동				71EL OF 01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용품업	및 경기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용품업		스포츠 의류	2010201	스포츠 의류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00100	및 관련 섬유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0102	제품	201020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제조업	2010204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010301	스포츠 가방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20103	<u>스포츠</u>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103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다리 제노비	2010303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11E-11	ошπ		- 11 <u> 11</u>		- Cilical Inc. III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2020102	자전거 도매업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20201	경기용품 도매업	2020103	스포츠 의류 도매업	46413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그에ㅂ	2020104	스포츠 가방 도매업	4649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2020105	스포츠 신발 도매업	46420	신발 도매업			
						2020201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202			2020202	자전거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스포츠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2020202		47419				
용품업	유통 및 임대업				스포츠 의류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임대업	00000	운동 및 경기용품	2020204	스포츠 가방 소매업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20202	성기용품 소매업	2020205	스포츠 신발 소매업	47430	신발 소매업			
			_ "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47993	방문 판매업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20203	운동 및 경기 용품 임대업	202030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76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30101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20100	20102	20102	20102	. <del> </del>	3010201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301 스포츠	30102	스포츠 베팅업	3010299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경기 서비스업			3010301	스포츠 에이전트업	73901	매니저업			
	시미스탑	30103	30103	30103	30103	스포츠 마케팅업	3010302	회원권 대행 판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30103	스포스 미게당합	3010303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71531	경영컨설팅업			
				3010399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911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3020101	스포츠 신문 발행업	58121	신문 발행업			
				3020102	스포츠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3020103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302 人포츠	30201	스포츠 미디어업	3020104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정보			3020105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스포츠 서비스업	서비스업			3020106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60222	유선 방송업			
VI-I				3020107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0299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3029900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3030001	태권도 교육기관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303 스포츠 교육	30300	스포츠	3030002	무술 교육기관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관	30300	교육기관	3030099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_			3030033	714	85613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3990101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99 기타		게임 개발 및 공급업		_	58202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스포츠 서비스업		× 0HH	3990199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9902	스포츠 여행언	3990200	스포츠 여행업	75210	여행사업			
		30002	39902 스포츠 여행업		100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 2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 1 스포츠 시설업

#### 101 스포츠시설 운영업

#### ◆ 10101 경기장 운영업

#### 분류코드 1010101 실내 경기장 운영업

•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실내 경기장

- 실내 체육관

- 실내 수영장

#### 분류코드 1010102 실외 경기장 운영업

• 각종 필드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육상경기

- 축구

- 야구

- 럭비

- 하키

#### 분류코드 1010103 경주장 운영업

•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경륜장

- 자동차 경주장

- 경마장

- 투우장

#### [제외]

-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발행소

#### ◆ 10102 참여스포츠시설 운영업

#### 분류코드 101020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동일 건물 내에서 복합적인 오락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종합 체육시설

- 복합 체육시설

#### 분류코드 101020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헬스클럽

#### [제외]

- 무도장

- 교육목적의 체력단련시설 운영

#### 분류코드 1010203 수영장 운영업

•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제외]

-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

#### 분류코드 1010204 볼링장 운영업

•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분류코드 1010205 당구장 운영업

•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분류코드 1010206 골프연습장 운영업

• 골프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분류코드 1010207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무도장

- 댄스홀

#### [제외]

- 무도유흥주점 및 디스코클럽 운영
-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

#### 분류코드 1010208 체육공원 운영업

• 일반대중이 여가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등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조성된 체육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분류코드 1010209 기원 운영업

• 바둑, 장기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제외]

- 교육목적의 바둑교실 운영

#### ◆ 1010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분류코드 1010301 골프장 운영업

•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 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 [제외]

- 골프 연습장

#### 분류코드 1010302 스키장 운영업

•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 [제외]

- 눈썰매장

-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

#### ◆ 1010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 분류코드 1010401 낚시장 운영업

•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유료 낚시터 운영

- 실내 낚시장 운영

#### 분류코드 1010499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 오락용 보트임대(물놀이 시설 내)

- 오락용 낚시배 운영

#### [제외]

- 유료 낚시터 운영

#### ♦ 10199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분류코드 10199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예시]

- 테니스장

- 야구연습장

- 스쿼시장

- 암벽등반

- 탁구장

- 게이트볼장

#### [제외]

- 오락용 사격장

#### 102 스포츠시설 건설업

#### 분류코드 1020001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운동장 등의 스포츠시설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 동으로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 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 [예시]

- 운동장 공사

#### 분류코드 1020002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 스포츠 토목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스타디움 공사

- 경기장 공사

## 스포츠 용품업

#### 20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2010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분류코드 2010101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경기용 장비, 수중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당구 장비, 볼링 장 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예시]

- 펜싱용구 제조 - 골프글러브 제조 - 설상 스키 제조

- 탁구용 기구 제조 - 볼링 및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 - 배트 및 스틱류 제조

- 장갑류 제조(경기용) - 라켓 제조 - 골프장비 제조

- 양궁장비 제조 - 공 제조(각종 경기용)

#### [제외]

-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

#### 분류코드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장비체력단련용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헬스 장비 제조 - 바벨 제조 - 클라이밍 로프 제조 - 체조용 링 제조 - 체조용품 제조 - 스프링보드 제조

#### [제외]

-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 -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

#### 분류코드 2010103 자전거 제조업

•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이륜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 [제외]

- 어린이용 삼륜자전거 제조

#### 분류코드 2010104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낚시장비 제조 - 낚시용 망 제조 - 수렵용구 제조

- 인조미끼 제조 - 조류 유인용구 제조

#### [제외]

- 양궁장비 제조 -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 - 어망 제조 - 골프장비(공, 글러브 제외) 제

#### 분류코드 2010105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시소 제조 - 미끄럼틀 제조 - 회전 그네 제조 - 놀이대 제조

#### 분류코드 2010106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모터, 풍력,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등의 건조도 포함한다.

#### [예시]

- 유띾용 보트 제조

- 경기용 선박 제조

- 운동용 선박 제조

- 카약 제조

- 구명정(노 추진식) 제조

- 커터제조

- 낚시용 보트 제조

#### [제외]

- 선체가 오락용 보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보트 제조

#### 분류코드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 및 경기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수렵용 공기총 제조 - 경기용 총포탄 제조 - 응원도구 제조

#### ◆ 20102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 분류코드 2010201 스포츠 의류 제조업

• 체육복 등 스포츠 관련 의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체육복 제조

- 운동복 제조

- 골프웨어 제조

- 수영복 제조

#### 분류코드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 캠핑용 직물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 텐트 제조

#### 분류코드 201020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 기타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구명자켓 제조

- 구명벨트 제조

#### 분류코드 2010204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 스포츠 관련 특수 의류 및 의류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20103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분류코드 2010301 스포츠 가방 제조업

• 스포츠 관련 가방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골프 가방 제조

- 낚시 가방 제조

- 등산용 배낭류 제조

#### 분류코드 20103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 운동용 신발, 경기용 신발 등 스포츠 관련 신발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경기용 신발 제조

- 운동화 제조

#### 분류코드 2010303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 각종 재료로 스포츠 관련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예시]

- 신발 깔창 제조

- 신발 바닥창 제조 - 에어펌프 깔창 제조

#### [제외]

- 스포츠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

#### 20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 ◆ 2020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 분류코드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운동장비 도매

- 낚시도구 도매

-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 경기용품 도매

-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 분류코드 2020102 자전거 도매업

• 자전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자전거 및 부품 도매

#### 분류코드 2020103 스포츠 의류 도매업

• 스포츠 관련 의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체육복 도매

- 운동복 도매

#### 분류코드 2020104 스포츠 가방 도매업

• 스포츠 관련 가방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스포츠 가방 도매

- 골프 가방 도매

#### 분류코드 2020105 스포츠 신발 도매업

• 가죽, 직물,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제조된 각종 스포츠 관련 신발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경기용 신발 도매

- 운동화 도매

#### ♦ 2020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분류코드 2020201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 스포츠 및 경기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등산 장비(텐트 포함) 소매

- 펜싱, 검도 장비 소매 - 헬스기구 소매

- 코트 및 필드게임 장비 소매

- 낚시장비 소매

- 당구장비 소매

- 바둑 소매

#### 분류코드 2020202 자전거 소매업

• 자전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

#### [예시]

-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소매

#### 분류코드 2020203 스포츠 의류 소매업

• 스포츠 관련 의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체육복 소매

- 운동복 소매

#### 분류코드 2020204 스포츠 가방 소매업

• 스포츠 관련 가방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스포츠가방 소매

- 골프 가방 소매

#### 분류코드 2020205 스포츠 신발 소매업

• 각종 재료의 스포츠 관련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경기용 신발 소매

- 운동화 도매

#### 분류코드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매 방법에 의하여 스포츠 관련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낚시용품 인터넷 판매

- 운동기구 인터넷 판매

- 캠핑용품 인터넷 판매

- 수영복 인터넷 판매

- 골프용품 인터넷 판매

- 축구화 인터넷 판매

- 요가복 및 용품 인터넷 판매

#### [제외]

- 제조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
-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 ♦ 20203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 분류코드 202030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 각종 운동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스키 임대

- 자전거 임대

- 카누 임대

## 3 스포츠 시설업

#### 301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 ◆ 30101 스포츠 경기업

#### 분류코드 3010100 스포츠 경기업

•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예시]

- 프로야구단 - 프로축구단 - 동계스포츠 클럽 - 실업경기단체 - 체스 클럽 - 사격 클럽

- 프로게임단

#### [제외]

-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

#### ♦ 30102 스포츠 베팅업

#### 분류코드 3010201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 스포츠 복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스포츠복권 발행

#### 분류코드 3010299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경주장과 독립되어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

#### ◆ 30103 스포츠 마케팅업

#### 분류코드 3010301 스포츠 에이전트업

• 스포츠인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고객을 위하여 계약협상, 금전문제 관리, 경력홍보 등을 수행한다.

#### [예시]

- 스포츠인 매니저

#### 분류코드 3010302 회원권 대행 판매업

• 스포츠 관련 무형 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골프회원권 중개

#### 분류코드 3010303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 스포츠 관련 마케팅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분류코드 3010399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 이 산업에는 독립된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경마 및 경주차 소유주, 코치,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 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견의 훈련활동 등이 포함된다.

#### [제외]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302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 ♦ 30201 스포츠 미디어업

#### 분류코드 3020101 스포츠 신문 발행업

•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발생하는 스포츠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스포츠신문 발행

#### [제외]

- 생활정보지 발행

- 전문회보, 주간뉴스 및 주간지
- 방송 또는 신문사. 출판사 및 기타 언론사에 뉴스자료 제공 활동

#### 분류코드 3020102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스포츠 관련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순간, 월간, 계간, 연간 등의 스포츠 정기간행물 및 잡지 등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스포츠 월간지 발행

#### [제외]

- 스포츠신문 발행

#### 분류코드 3020103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분류코드 3020104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스포츠 관련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다.

#### [제외]

- 중계소 또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서비스 활동

#### 분류코드 3020105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스포츠 관련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선 및 위성방송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송출된다.

#### [예시]

-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 분류코드 3020106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스포츠 관련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스포츠 케이블방송

#### 분류코드 3020107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스포츠 관련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스포츠 관련 위성방송 송출

#### ◆ 30299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 분류코드 3029900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 스포츠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경마 정보 서비스

- 축구 정보 서비스

- 야구 정보 서비스

#### 303 스포츠 교육기관

#### ◆ 30300 스포츠 교육기관

#### 분류코드 3030001 태권도 교육기관

• 태권도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태권도학원

#### 분류코드 3030002 무술 교육기관

• 태권도를 제외한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유도학원

#### 분류코드 3030099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와 바둑 등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축구교실

- 요가학원

- 바둑학원

#### 39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39901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 분류코드 3990101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스포츠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예시]

- 스포츠 온라인 게임 S/W 개발

- 스포츠 휴대폰용 게임 S/W 개발

- 스포츠 PDA 게임 S/W 개발

- 스포츠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 분류코드 3990199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 스포츠를 주제로 한 컴퓨터 패키지게임, 아케이드게임 및 비디오게임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게임기기에 이용되는 스포츠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예시]

- 스포츠게임 개발

- 골프 게임 개발

- 바둑 게임 개발

- 스포츠 PC 패키지게임 S/W 개발
- 스포츠 휴대용게임기용 게임 S/W 개발

#### [제외]

- 스포츠 온라인 및 모바일용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 ♦ 39902 스포츠 여행업

#### 분류코드 3990200 스포츠 여행업

• 국내, 국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포츠 여행 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일반여행사

- 국외여행사

- 국내여행사

#### 스포츠산업 관련 용어 정의 3

#### ◆ 스포츠산업

스포츠 산업이란 스포츠를 기업 활동의 수익대상으로 바라보고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 비스의 창출하는 일체의 생산 활동

#### ◆ 스포츠기구

스포츠기구는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구

#### [예시]

- 매트

- 뜁틀)

- 평균대

- 벤치 프레스

- 런닝머신(트레드밀)

#### ◆ 캠핑용 직물제품

캠핑용 직물제품은 캠핑에 사용되는 텐트. 로프와 같은 직기에 걸어 짠 물건으로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등의 제품

#### [예시]

- 텐트(코베아, 콜맨 등)

- 침낭(네파, 카벨라스) - 로프

#### ◆ 구명 자켓, 구명 벨트

구명 자켓과 구명 벨트는 수상용 인명구조용을 목적으로 부력재 또는 co2 gas를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

#### [예시]

- 구명조끼(버팔로)

- 구명벨트(씨울프)

#### ◆ 스포츠의류 제조

스포츠 의류 제조란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스포츠 종목의 특성인 기능적, 활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되는 의류제품

#### [예시]

- 르까프

- 프로스펙스

- 휠라

#### ◆ 스포츠의류 부분품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 제조에 필요한 부품

#### [예시]

- 한길섬유 - 고어텍스 - COLDBACK - SILFINE

#### ♦ 등산용 배낭

등산에 사용되는 물건을 넣어서 등에 질 수 있도록 헝겊이나 가죽 따위로 만든 가방

#### [예시]

- 콜롬비아 - K2 - 코오롱 - MILLET

#### ◆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경기와 특수한 종목을 목적으로 개발된 신발의 제조

#### [예시]

- 육상 스파이크 - 발레슈즈 - 농구화 - 테니스화

#### ♦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경기를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운동화의 부품

#### [예시]

- 축구화 밑창(파라마스 회사)

#### ◆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수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압축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탄알이 발사되도록 만든 총, 경 기용 총포탄은 경기에 사용되는 총포의 탄환

#### [예시]

- 공기총(덕일, 신성산업) - 총포탄((주)풍산)

#### ♦ 범선, 요트, 카누, 카약

범선은 바람을 이용한 선박으로 돛단배 또는 돛배라고 불리며,

요트는 배안에 세워진 돛대와 고물(뒷부분)에 달린 키를 조정하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나아 가는 선박

카누는 선수·선미가 뾰족하고 1개 이상의 노로 움직이는 경량의 소형 선박으로 정의 카약은 좌석에 앉아 발을 앞으로 하고 노를 좌우로 번갈아 저어 빠르기를 겨루는 카누 경기

#### [예시]

- 범선, 요트(베스트마린, 코오롱마린(구매, 대여업) 등)
- 카누, 카약(콜맨, K2 등)

#### ◆ 무도장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

#### [예시]

- 스타 무도장

- 천호 무도장

- 을지 무도장

 $\bullet \circ \circ$ 

#### ♦ 체육공원 운영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세분 중 하나로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운영

#### [예시]

- 올림픽 공원

- 금정 체육공원

- 한강공원

#### ◆ 스포츠토토

대중스포츠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 투표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 부하는 스포츠레저 게임(축구, 농구, 야구, 골프 등)

#### [예시]

- 스포츠토토

- 스포츠 프로토

#### ♦ 스포츠인 매니저

스포츠인 매니저는 선수의 입단, 연봉, 인도스먼트(광고, 협찬, 라이센싱, 출판 등), 미디어 관계 관리를 큰 축으로 하여 선수의 훈련지원, 재무관리, 문제해결 법적자문에 이르는 모든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

#### [예시]

- IB스포츠

- 세마스포츠마케팅

#### ◆ 스포츠용 자전거

견고하고 전문산악용으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MTB를 포함하여 일반온로드 위주로 달리면서도 MTB처럼 스포츠틱한 디자인과 구성을 가진 자전거(싸이클, 자전거묘기용 BMX 등)

#### [예시]

- 삼천리

- 코렉스

- 알톤

#### ◆ 댄스교습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육체의 율동적인 예술 활동을 교습(벨리댄스, 탭댄스, 포크댄스, 사교댄스, 힙합댄스 등)

#### [예시]

- DFA Academy

- 슈퍼브댄스 스튜디오

## 조사표와 결산서의 관계

#### 도소매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Ⅰ.매출액		1,234	⑧항 (1) 매출액		
1. 총매출액	1,234				
상품매출액	1,000				
기타영업수익	234				
Ⅱ. 매출원가		740	⑧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1. 기초상품매출액	45				
2. 당기상품매출액	735				
3. 기말상품매출액	40				
Ⅲ. 매출총이익		494			
Ⅳ. 판매비와 관리비		380	⑧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200				
2. 퇴직급여	20				
<u>:</u>	:	:			
11. 수도광열비	5				
12. 기타	30				
V. 영업이익		114	⑧항 (3)영업이익		

## (교육)서비스업

(단위: 백만원)

	_		·	11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Ⅰ.매출액		1,234	⑧항 (1) 매출액		
1. 상품매출액	234				
2. 용역매출액	1,000				
Ⅱ. 매출원가		623	⑧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1. 상품매출원가	123				
2. 용역매출원가	500				
Ⅲ. 매출총이익		494			
Ⅳ. 판매비와 관리비		380	⑧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200				
2. 퇴직급여	20				
:	:	:			
11. 수도광열비	5				
12. 기타	30				
V. 영업이익		114	⑧항 (3)영업이익		

### 제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Ⅰ.매출액		1,234	⑧항 (1) 매출액		
1. 제품매출액	1,000				
2. 상품매출액	234				
Ⅱ. 매출원가		623	⑧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1. 제품매출원가	523				
2. 상품매출원가	100				
Ⅲ. 매출총이익		494			
Ⅳ. 판매비와 관리비		380	⑧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1.급여	200				
2.퇴직급여	20				
:	:	:			
11. 소모품비	5				
12. 기타	30				
V. 영업이익		114	⑧항 (3)영업이익		

# 光 然 为 为 外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

## 부록 2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통계표

#### [부록 표-1]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 수	비중
	전 체	105,445	100.0
	스포츠시설업	42,122	39.9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31.9
	스포츠서비스업	29,702	28.2
	개인사업체	91,681	86.9
포지청대	회사법인	11,256	10.7
조직형태	회사이외 법인	1,428	1.4
	비법인단체	1,080	1.0
	1-4인	91,834	87.1
	5-9인	9,197	8.7
종사규모	10-19인	2,625	2.5
	20-49인	1,063	1.0
	50인 이상	726	0.7
	서울특별시	19,473	18.5
	부산광역시	7,321	6.9
	대구광역시	5,330	5.1
	인천광역시	5,159	4.9
	광주광역시	3,054	2.9
	대전광역시	3,045	2.9
	울산광역시	2,481	2.4
	세종특별자치시	450	0.4
지역	경기도	25,652	24.3
	강원도	4,183	4.0
	충청북도	3,391	3.2
	충청남도	4,241	4.0
	전라북도	3,821	3.6
	전라남도	3,674	3.5
	경상북도	5,482	5.2
	경상남도	6,951	6.6
	제주특별자치도	1,73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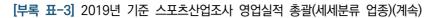
(단위 : 개 백만워)

	구분	사업체 수	매출액	내수액	수출액	영업비용	위 : 개 백만원) 영업이익
7	전 체	105,445	80,684,249	78,868,480	1,815,769	73,735,403	6,948,846
	스포츠시설업	42,122	20,748,018	20,744,484	3,535	18,636,566	2,111,452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35,404,566	33,730,322	1,674,244	32,467,057	2,937,510
	스포츠서비스업	29,702	24,531,664	24,393,674	137,990	22,631,781	1,899,884
	개인사업체	91,681	22,609,771	22,423,564	186,206	19,731,624	2,878,147
조직형태	회사법인	11,256	44,253,787	42,624,224	1,629,562	40,830,412	3,423,374
고극입네	회사이외 법인	1,428	12,525,758	12,525,758	0	11,938,464	587,294
	비법인단체	1,080	1,294,933	1,294,933	0	1,234,903	60,030
	1-4인	91,834	21,249,717	21,225,805	23,912	18,241,072	3,008,645
	5-9인	9,197	8,428,623	8,127,309	301,314	7,807,458	621,165
종사규모	10-19인	2,625	6,357,492	5,985,406	372,085	5,822,789	534,702
	20-49인	1,063	7,495,353	7,298,333	197,020	7,021,450	473,903
	50인 이상	726	37,153,065	36,231,626	921,438	34,842,634	2,310,430
	서울특별시	19,473	30,327,952	29,303,480	1,024,472	28,349,898	1,978,055
	부산광역시	7,321	5,284,755	5,137,273	147,483	4,933,524	351,232
	대구광역시	5,330	1,966,857	1,944,209	22,648	1,767,680	199,177
	인천광역시	5,159	2,876,141	2,776,441	99,700	2,600,646	275,496
	광주광역시	3,054	1,612,786	1,609,876	2,909	1,477,551	135,235
	대전광역시	3,045	1,746,287	1,733,521	12,766	1,587,816	158,471
	울산광역시	2,481	808,043	808,043	0	727,071	80,972
	세종특별자치시	450	161,459	161,271	188	141,746	19,713
지역	경기도	25,652	20,931,284	20,502,762	428,522	18,801,666	2,129,619
	강원도	4,183	2,348,022	2,347,857	164	2,207,449	140,572
	충청북도	3,391	1,745,701	1,720,861	24,841	1,487,265	258,436
	충청남도	4,241	1,649,697	1,649,559	138	1,453,898	195,800
	전라북도	3,821	1,400,354	1,396,256	4,098	1,199,506	200,848
	전라남도	3,674	1,397,729	1,397,729	0	1,197,895	199,835
	경상북도	5,482	2,208,686	2,208,663	24	1,952,664	256,022
	경상남도	6,951	3,054,161	3,006,345	47,816	2,752,953	301,208
	제주특별자치도	1,737	1,164,332	1,164,332	0	1,096,176	68,156

# [부록 표-3]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영업실적 총괄(세세분류 업종)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업체 수	매출액	내수액	수출액	영업비용	위 : 개 백만원) 영업이익
전 체	105,445	80,684,249	78,868,480	1,815,769	73,735,403	6,948,846
실내 경기장 운영업	99	220,031	220,031	0	211,141	8,890
실외 경기장 운영업	94	314,603	314,603	0	295,458	19,145
경주장 운영업	15	3,021,989	3,021,989	0	2,858,516	163,473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781	1,213,947	1,213,947	0	1,156,583	57,364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745	2,198,191	2,198,191	0	1,907,845	290,346
수영장 운영업	430	395,072	395,072	0	431,600	-36,528
볼링장 운영업	908	283,014	283,014	0	251,656	31,358
당구장 운영업	14,173	1,015,466	1,015,466	0	703,923	311,543
골프연습장 운영업	8,050	2,311,850	2,311,850	0	2,033,802	278,048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182	13,261	13,261	0	10,101	3,160
체육공원 운영업	47	138,247	138,247	0	134,897	3,350
기원 운영업	774	36,365	36,365	0	24,988	11,377
골프장 운영업	427	5,898,722	5,898,722	0	5,196,181	702,542
스키장 운영업	16	1,043,540	1,043,540	0	1,062,904	-19,364
낚시장 운영업	875	89,577	89,577	0	63,346	26,231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634	118,186	118,022	164	93,259	24,927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4,063	612,155	612,155	0	510,301	101,855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655	1,224,170	1,220,799	3,371	1,139,089	85,081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154	599,632	599,632	0	550,977	48,655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402	691,289	625,734	65,555	666,149	25,140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88	481,563	479,955	1,609	452,926	28,637
자전거 제조업	46	151,157	151,157	0	143,050	8,107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25	413,203	381,242	31,961	417,537	-4,334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88	141,667	141,667	0	113,213	28,454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59	74,759	74,759	0	73,672	1,088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6	194,132	194,132	0	167,747	26,385
스포츠 의류 제조업	915	4,031,090	3,281,356	749,734	3,608,279	422,811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74	108,455	107,936	520	97,583	10,87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62	83,999	83,999	0	73,302	10,697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56	40,797	40,797	0	35,332	5,465
스포츠 가방 제조업	150	161,217	148,224	12,993	130,156	31,061
스포츠 신발 제조업	126	737,601	669,361	68,240	681,625	55,977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120	215,858	175,562	40,296	204,720	11,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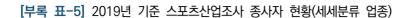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수	매출액	내수액	수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2,003	6,173,577	5,770,541	403,036	5,785,778	387,799
자전거 도매업	193	437,749	437,749	0	419,233	18,516
스포츠 의류 도매업	667	2,762,774	2,623,951	138,823	2,506,070	256,704
스포츠 가방 도매업	16	141,240	139,275	1,965	124,331	16,909
스포츠 신발 도매업	262	2,559,798	2,551,698	8,099	2,376,442	183,356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10,219	3,845,721	3,839,162	6,559	3,546,309	299,412
자전거 소매업	3,137	635,675	635,675	0	548,322	87,353
스포츠 의류 소매업	11,179	7,033,998	7,033,998	0	6,509,082	524,916
스포츠 가방 소매업	20	18,295	18,295	0	16,651	1,644
스포츠 신발 소매업	1,345	3,342,706	3,337,763	4,943	3,000,635	342,071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787	771,604	631,693	139,912	631,686	139,918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966	154,640	154,640	0	137,228	17,412
스포츠 경기업	75	757,764	751,517	6,248	784,764	-26,999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1	5,406,134	5,406,134	0	5,402,952	3,182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5	6,840,503	6,840,503	0	6,534,672	305,831
스포츠 에이전트업	39	44,555	44,555	0	38,734	5,820
회원권 대행 판매업	122	132,055	132,055	0	120,369	11,686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34	22,177	22,177	0	19,449	2,728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771	1,895,846	1,895,846	0	1,801,491	94,355
스포츠 신문 발행업	8	43,352	43,352	0	35,884	7,468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42	47,138	47,138	0	41,037	6,101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8	236,076	236,076	0	225,768	10,308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6	324,022	324,022	0	322,134	1,889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	209,794	209,794	0	204,081	5,714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12	26,120	26,120	0	31,668	-5,548
태권도 교육기관	9,711	1,237,045	1,237,045	0	887,804	349,241
무술 교육기관	5,835	443,118	443,118	0	311,394	131,724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11,290	1,143,891	1,143,891	0	867,430	276,461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207	3,388,478	3,256,771	131,707	2,843,331	545,147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7	343,836	343,801	35	297,023	46,813
스포츠 여행업	1,422	1,989,759	1,989,759	0	1,861,797	127,962

# [부록 표-4]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	전 체	105,445	448,976
	스포츠시설업	42,122	191,830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137,082
	스포츠서비스업	29,702	120,064
	개인사업체	91,681	238,437
조직형태	회사법인	11,256	168,919
<b></b>	회사이외 법인	1,428	32,629
	비법인단체	1,080	8,991
	1-4인	91,834	218,611
	5-9인	9,197	56,731
종사규모	10-19인	2,625	37,801
	20-49인	1,063	38,229
	50인 이상	726	97,603
	서울특별시	19,473	105,263
	부산광역시	7,321	31,077
	대구광역시	5,330	17,275
	인천광역시	5,159	17,504
	광주광역시	3,054	11,098
	대전광역시	3,045	10,420
	울산광역시	2,481	8,209
	세종특별자치시	450	1,609
지역	경기도	25,652	115,774
	강원도	4,183	21,901
	충청북도	3,391	11,594
	충청남도	4,241	14,761
	전라북도	3,821	14,871
	전라남도	3,674	14,446
	경상북도	5,482	18,829
	경상남도	6,951	26,703
	제주특별자치도	1,737	7,643



(단위 : 개 명)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 체     105,445       실내 경기장 운영업     99       실외 경기장 운영업     94       경주장 운영업     15	448,976 1,437 2,191 6,489 16,051 38,272 6,965
실외 경기장 운영업 94 경주장 운영업 15	2,191 6,489 16,051 38,272
경주장 운영업 15	6,489 16,051 38,272
	16,051 38,272
	38,272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78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745	6 965
수영장 운영업 430	0,000
볼링장 운영업 908	4,194
당구장 운영업 14,173	25,361
골프연습장 운영업 8,050	25,425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182	480
체육공원 운영업 47	1,149
기원 운영업 774	1,054
골프장 운영업 427	26,595
스키장 운영업 16	8,895
낚시장 운영업 875	1,737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634	2,679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4,063	10,641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655	6,367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154	5,850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402	3,000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88	2,497
자전거 제조업 46	879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25	2,589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88	774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59	413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6	454
스포츠 의류 제조업 915	11,318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74	85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62	573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56	215
스포츠 가방 제조업 150	670
스포츠 신발 제조업 126	2,907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120	1,286

#### [부록 표-5]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영업실적 총괄(세세분류 업종)(계속)

**→** ♦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2,003	15,605
자전거 도매업	193	1,114
스포츠 의류 도매업	667	6,392
스포츠 가방 도매업	16	215
스포츠 신발 도매업	262	2,438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10,219	26,212
자전거 소매업	3,137	5,276
스포츠 의류 소매업	11,179	37,706
스포츠 가방 소매업	20	113
스포츠 신발 소매업	1,345	6,303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787	3,816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966	3,463
스포츠 경기업	75	1,968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1	251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5	5,011
스포츠 에이전트업	39	233
회원권 대행 판매업	122	639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34	200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771	7,999
스포츠 신문 발행업	8	333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42	263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8	526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6	613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	306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12	221
태권도 교육기관	9,711	26,732
무술 교육기관	5,835	10,677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11,290	27,199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207	17,570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7	1,262
스포츠 여행업	1,422	18,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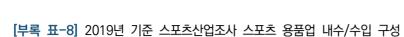


# [부록 표-6]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인력충원 현황

	구분	사업체 수	19년 충원 인력	20년 충원 인력
₹	선 체	105,445	13,463	6,310
	스포츠시설업	42,122	5,464	2,866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4,222	2,311
	스포츠서비스업	29,702	3,777	1,133
	개인사업체	91,681	6,998	2,909
조직형태	회사법인	11,256	5,325	2,575
소식영대	회사이외 법인	1,428	742	569
	비법인단체	1,080	399	258
	1-4인	91,834	5,237	1,933
	5-9인	9,197	2,783	1,245
종사규모	10-19인	2,625	1,499	1,125
	20-49인	1,063	1,223	616
	50인 이상	726	2,721	1,391
	서울특별시	19,473	3,000	1,619
	부산광역시	7,321	468	103
	대구광역시	5,330	209	78
	인천광역시	5,159	148	89
	광주광역시	3,054	359	265
	대전광역시	3,045	348	160
	울산광역시	2,481	238	25
	세종특별자치시	450	80	16
지역	경기도	25,652	5,441	1,974
	강원도	4,183	507	189
	충청북도	3,391	297	124
	충청남도	4,241	624	532
	전라북도	3,821	547	399
	전라남도	3,674	449	257
	경상북도	5,482	130	54
	경상남도	6,951	301	136
	제주특별자치도	1,737	318	291

# [부록 표-7]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사업체 경영 현황, 전망

	구분	사업체 수	17년 경영 현황	18년 경영 전망
7	전 체	105,445	-3.6	-30.5
	스포츠시설업	42,122	-2.9	-29.5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5.0	-28.9
	스포츠서비스업	29,702	-2.8	-33.8
	개인사업체	91,681	-3.8	-30.8
조직형태	회사법인	11,256	-2.4	-28.5
조심왕대	회사이외 법인	1,428	-0.5	-32.3
	비법인단체	1,080	-0.7	-26.5
	1-4인	91,834	-3.9	-31.3
	5-9인	9,197	-2.3	-27.0
종사규모	10-19인	2,625	-0.3	-21.3
	20-49인	1,063	0.6	-21.0
	50인 이상	726	4.2	-19.6
	서울특별시	19,473	2.7	-37.0
	부산광역시	7,321	-7.9	-14.0
	대구광역시	5,330	-15.1	-18.5
	인천광역시	5,159	4.4	-35.7
	광주광역시	3,054	0.6	-37.1
	대전광역시	3,045	-4.1	-40.4
	울산광역시	2,481	-9.0	-14.1
	세종특별자치시	450	-3.9	-33.9
지역	경기도	25,652	-3.0	-35.2
	강원도	4,183	-5.8	-25.7
	충청북도	3,391	2.0	-34.0
	충청남도	4,241	-3.0	-40.5
	전라북도	3,821	-2.9	-39.6
	전라남도	3,674	-2.7	-42.1
	경상북도	5,482	-11.3	-13.6
	경상남도	6,951	-10.6	-14.5
	제주특별자치도	1,737	-6.9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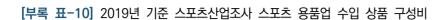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업체 수	내수	(단위 : 개, 백만원) 수입
	전 체	33,621	32,113,332	1,616,990
	개인사업체	27,789	13,884,004	205,275
포지하다	회사법인	5,809	18,212,681	1,411,689
조직형태	회사이외 법인	18	15,913	27
	비법인단체	5	735	0
	1-4인	30,034	13,764,723	99,178
	5-9인	2,541	4,692,585	179,636
종사규모	10-19인	639	3,218,159	210,454
	20-49인	290	3,137,194	156,242
	50인 이상	117	7,300,670	971,480
	서울특별시	5,724	13,559,691	1,179,241
	부산광역시	2,580	2,746,689	108,399
	대구광역시	1,818	970,378	90
	인천광역시	1,506	1,431,217	4,965
	광주광역시	872	778,656	1,638
	대전광역시	976	791,202	29,603
	울산광역시	719	307,194	1,932
	세종특별자치시	90	29,643	2,393
지역	경기도	8,281	6,594,416	243,167
	강원도	1,484	391,385	3,577
	충청북도	962	588,427	12,078
	충청남도	1,433	535,625	3,375
	전라북도	1,335	657,736	5,699
	전라남도	1,262	495,357	3,981
	경상북도	1,778	706,977	5,428
	경상남도	2,291	1,362,163	5,466
	제주특별자치도	510	166,577	5,958

# [부록 표-9]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스포츠 용품업 내수 상품 구성비

구 <b>.</b> 전		사업체 수	스포츠 기구	스포츠 의류	스포츠 신발	공류	라켓류	7151
전	체		* 1 1	의규	신달	0"	-1 Xπ	기타
	•	33,621	24.8	40.6	12.1	2.8	2.1	17.5
개	인사업체	27,789	25.0	41.0	11.4	2.2	2.1	18.2
회. 조직형태	사법인	5,809	24.0	38.9	15.4	5.6	2.3	13.8
	사이외 법인	18	35.4	20.9	5.7	5.0	0.0	33.0
П	법인단체	5	7.7	9.9	0.0	0.0	0.0	82.5
1-	-4인	30,034	25.6	40.7	11.7	2.8	2.2	17.0
5-	-9인	2,541	18.6	40.6	16.7	3.0	1.5	19.6
종사규모 10	)-19인	639	18.3	37.8	11.8	2.4	1.6	28.0
20	)-49인	290	13.4	38.2	16.7	3.5	1.6	26.7
50	)인 이상	117	8.5	39.3	23.5	6.1	1.6	20.9
서	울특별시	5,724	34.8	46.6	9.9	1.6	2.0	4.9
부	산광역시	2,580	13.1	39.9	16.9	2.0	1.1	27.0
대	구광역시	1,818	8.6	46.2	10.9	5.3	0.9	28.1
인	천광역시	1,506	49.3	35.9	8.7	0.2	0.2	5.7
광	주광역시	872	18.2	53.5	17.1	2.3	1.7	7.3
대	전광역시	976	18.2	38.2	13.9	6.2	4.0	19.4
울	산광역시	719	11.9	48.6	8.4	1.7	1.4	28.1
세	종특별자치시	90	56.8	11.3	5.3	0.7	0.3	25.4
지역 경.	기도	8,281	29.0	44.7	11.9	3.5	1.5	9.4
강	원도	1,484	33.0	30.3	9.5	2.3	3.0	21.9
ਨੌ	청북도	962	25.8	36.8	12.5	3.8	3.7	17.4
ਨੁੱ	청남도	1,433	20.9	34.7	15.3	4.3	4.3	20.6
전	라북도	1,335	17.4	45.7	18.5	1.5	2.1	14.8
전	라남도	1,262	18.6	28.2	9.3	1.6	4.0	38.4
경	상북도	1,778	11.3	32.2	10.6	6.0	4.4	35.4
경	상남도	2,291	14.5	29.9	14.1	1.7	2.4	37.4
제	주특별자치도	510	38.5	31.9	10.0	0.7	0.4	18.6



							(1	1위 · 개, %)
7	분	사업체 수	스포츠 기구	스포츠 의류	스포츠 신발	공류	라켓류	기타
전	체	2,075	36.3	34.1	9.4	3.0	6.1	11.0
	개인사업체	1,845	37.9	34.8	7.4	3.0	6.4	10.5
조직형태	회사법인	228	23.9	28.7	26.3	2.8	3.8	14.4
	회사이외 법인	1	0.0	0.0	0.0	0.0	0.0	100.0
	1-4인	1,752	38.5	34.4	7.2	3.3	6.9	9.8
	5-9인	204	24.2	35.0	26.0	1.1	0.5	13.2
종사규모	10-19인	73	29.8	25.2	14.1	0.6	0.1	30.3
	20-49인	23	20.8	30.2	7.6	5.8	12.3	23.3
	50인 이상	24	16.7	39.0	20.8	1.1	10.5	11.9
	서울특별시	333	23.5	44.3	15.9	3.0	8.8	4.6
	부산광역시	81	93.4	1.6	4.9	0.0	0.0	0.1
	대구광역시	1	0.0	0.0	0.0	0.0	0.0	100.0
	인천광역시	37	68.8	10.7	6.3	0.3	0.3	13.6
	광주광역시	12	65.3	15.9	4.5	5.8	0.4	8.1
	대전광역시	187	73.2	10.6	12.1	1.7	1.6	0.8
	울산광역시	33	45.7	0.9	4.9	0.0	48.5	0.0
	세종특별자치시	43	56.4	4.5	6.3	2.1	6.8	23.9
지역	경기도	425	10.7	76.1	6.4	0.2	0.0	6.5
	강원도	108	38.8	14.3	4.2	0.0	0.0	42.6
	충청북도	283	20.0	17.1	12.0	10.2	7.7	33.0
	충청남도	63	91.6	4.1	0.2	1.0	0.0	3.2
	전라북도	183	29.4	48.6	12.4	1.9	2.6	5.1
	전라남도	190	57.7	4.5	3.6	6.4	20.6	7.1
	경상북도	3	50.0	16.7	0.0	0.0	0.0	33.3
	경상남도	44	0.0	63.6	15.9	0.0	18.2	2.3
	제주특별자치도	50	48.7	32.7	13.6	2.0	2.0	1.1

#### [부록 표-11]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스포츠 시설업 영업개월 수

(단위 : 개 월)

=	구분	사업체 수	(단위 : 개, 월) 영업 개월 평균
	체	41,313	11.9
	개인사업체	37,446	11.9
조직형태	회사법인	2,438	11.7
	회사이외 법인	1,090	11.9
	비법인단체	340	11.9
	1-4인	35,452	11.9
	5-9인	3,582	11.8
종사규모	10-19인	1,251	11.8
	20-49인	568	11.8
	50인 이상	460	11.7
	서울특별시	7,542	12.0
	부산광역시	2,578	12.0
	대구광역시	1,845	12.0
	인천광역시	2,185	11.9
	광주광역시	1,165	11.9
	대전광역시	1,160	11.8
	울산광역시	1,078	12.0
	세종특별자치시	170	11.6
지역	경기도	10,019	11.9
	강원도	1,738	10.9
	충청북도	1,535	11.8
	충청남도	1,728	11.7
	전라북도	1,435	11.8
	전라남도	1,496	11.7
	경상북도	2,299	12.0
	경상남도	2,691	11.9
	9.9 ET	2,001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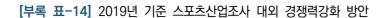
#### [부록 표-12]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스포츠 시설업 이용인원

(단위 : 개 명)

전 체 5,348 618,919,058  게인시업체 4,134 408,405,302 회사비인 729 88,088,963 회사이의 법인 349 87,681,728 비법인단체 136 34,743,066		 구분	사업체 수	(단위 : 개, 명) 이용인원
표진형태 원시법인 349 88,088,963 회사이외 법인 349 87,681,728 비법인단체 136 34,743,066	<u>ح</u>	<u>.</u> 체		618,919,058
최사이의 법인 349 87,681,728 비법인단체 136 34,743,066		개인사업체	4,134	408,405,302
회사이의 법인 349 87,681,728 비법인단체 136 34,743,066 4289 452,927,521 5-9인 448 69,083,936 50인 이상 341 50,338,392 42,262,838 당인 이상 341 50,338,392 42,894 42,894 42,899 452,927,521 62,838 50인 이상 341 50,338,392 42,894	죄ᆑ대	회사법인	729	88,088,963
종시규모 10-19인 4,289 452,927,521 5-9인 448 69,083,936 10-19인 137 24,306,372 20-49인 133 22,262,838 50인 이상 341 50,338,392 서울특별시 617 25,776,689 부산광역시 339 36,274,254 대구광역시 271 84,267,320 인천광역시 212 10,087,260 광주광역시 128 10,457,551 대전광역시 125 19,324,284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세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기당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쪼걱영네	회사이외 법인	349	87,681,728
중시규모 5-9인 448 69,083,936 10-19인 137 24,306,372 20-49인 133 22,262,838 50인 이상 341 50,338,392 서울특별시 617 25,776,689 부산광역시 339 36,274,254 대구광역시 271 84,267,320 인천광역시 212 10,087,260 광주광역시 128 10,457,551 대전광역시 125 19,324,284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세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비법인단체	136	34,743,066
종사규모 10-19인 137 24,306,372 20-49인 133 22,262,838 50인 이상 341 50,338,392 서울특별시 617 25,776,689 부산광역시 339 36,274,254 대구광역시 271 84,267,320 인천광역시 212 10,087,260 광주광역시 128 10,457,551 대전광역시 125 19,324,284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세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지역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1-4인	4,289	452,927,521
20-49인   133   22,262,838   50인 이상   341   50,338,392     서울특별시   617   25,776,689     부산광역시   339   36,274,254     대구광역시   271   84,267,320     인천광역시   212   10,087,260     광주광역시   128   10,457,551     대전광역시   125   19,324,284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서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지역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북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5-9인	448	69,083,936
50인 이상 341   50,338,392     서울특별시 617   25,776,689     부산광역시 339   36,274,254     대구광역시 271   84,267,320     인천광역시 212   10,087,260     광주광역시 128   10,457,551     대전광역시 125   19,324,284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세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종사규모	10-19인	137	24,306,372
사울특별시 617 25,776,689 부산광역시 339 36,274,254 대구광역시 271 84,267,320 인천광역시 212 10,087,260 광주광역시 128 10,457,551 대전광역시 125 19,324,284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세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지역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20-49인	133	22,262,838
부산광역시 339 36,274,254 대구광역시 271 84,267,320 인천광역시 212 10,087,260 광주광역시 128 10,457,551 대전광역시 125 19,324,284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세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50인 이상	341	50,338,392
대구광역시 271 84,267,320 인천광역시 212 10,087,260 광주광역시 128 10,457,551 대전광역시 125 19,324,284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세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서울특별시	617	25,776,689
인천광역시 212 10,087,260 광주광역시 128 10,457,551 대전광역시 125 19,324,284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세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부산광역시	339	36,274,254
광주광역시 128 10,457,551 대전광역시 125 19,324,284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세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대구광역시	271	84,267,320
대전광역시 125 19,324,284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세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인천광역시	212	10,087,260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세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광주광역시	128	10,457,551
지역 선공특별자치시 21 2,815,434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대전광역시	125	19,324,284
지역 경기도 1,191 81,369,719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울산광역시	105	17,139,961
강원도 426 31,893,710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세종특별자치시	21	2,815,434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지역	경기도	1,191	81,369,719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북도 236 41,460,241		강원도	426	31,893,710
전라북도 236 41,460,241		충청북도	212	19,913,576
		충청남도	220	31,139,700
전라남도 231 14,109,045		전라북도	236	41,460,241
		전라남도	231	14,109,045
경상북도 442 69,310,988		경상북도	442	69,310,988
경상남도 429 108,424,621		경상남도	429	108,424,621
제주특별자치도 143 15,154,705		제주특별자치도	143	15,154,705

#### [부록 표-13]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스포츠 서비스업 고객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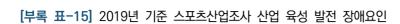
							(닌-	위: 개, %)
7	분	사업체 수	7세 이하	8세~13세	14세~19 세	20세~39 세	40세~59 세	60세 이상
전	체	29,702	9.5	30.1	16.3	24.6	14.6	4.8
	개인사업체	26,287	10.6	32.8	16.6	23.0	13.0	4.0
조직형태	회사법인	2,361	1.5	8.7	12.5	37.8	27.8	11.7
구 j 인데	회사이외 법인	318	2.1	14.4	15.8	36.3	23.2	8.3
	비법인단체	735	2.1	10.9	17.6	35.2	25.3	8.9
	1-4인	26,110	9.9	31.2	16.8	23.9	13.8	4.4
	5-9인	2,797	7.6	25.1	12.4	29.6	19.1	6.1
종사규모	10-19인	531	5.0	15.3	13.0	31.9	23.9	10.9
	20-49인	140	2.8	10.3	8.4	31.5	29.9	17.1
	50인 이상	123	0.7	5.7	11.0	34.3	32.8	15.3
	서울특별시	6,113	9.5	16.6	17.0	34.0	18.8	4.1
	부산광역시	2,135	7.7	29.9	15.2	22.7	17.2	7.3
	대구광역시	1,640	14.1	26.0	15.2	22.8	18.3	3.7
	인천광역시	1,455	20.4	25.3	14.5	25.8	11.2	2.8
	광주광역시	983	6.4	43.1	14.6	18.6	13.1	4.2
	대전광역시	891	7.7	39.4	12.9	15.6	14.5	9.9
	울산광역시	663	12.0	25.2	14.3	24.8	18.1	5.6
	세종특별자치시	188	14.9	38.0	11.1	23.4	9.9	2.6
지역	경기도	7,152	8.8	31.4	20.5	25.6	10.4	3.3
	강원도	908	5.8	34.8	8.7	26.6	17.4	6.7
	충청북도	855	5.2	39.8	10.0	18.9	18.5	7.7
	충청남도	1,033	8.6	47.8	10.7	13.0	13.2	6.8
	전라북도	1,013	4.6	39.2	14.5	20.5	17.1	4.1
	전라남도	862	5.1	43.5	15.2	15.8	12.4	8.0
	경상북도	1,339	13.5	31.2	16.9	23.1	11.3	4.0
	경상남도	1,909	10.9	37.9	16.7	16.4	12.6	5.5
	제주특별자치도	562	4.6	33.5	12.7	24.0	17.7	7.6



	구분	사업체 수	전문 인력 양성	국산제품 품질 제고	자체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٨.	<sup>년</sup> 체	105,445	12.5	15.0	8.1
	스포츠시설업	42,122	12.5	10.2	6.1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6.7	24.5	11.8
	스포츠서비스업	29,702	19.3	10.9	6.9
	개인사업체	91,681	12.7	14.7	7.8
조직형태	회사법인	11,256	9.0	19.3	11.6
고극8대	회사이외 법인	1,428	23.3	2.6	4.6
	비법인단체	1,080	19.0	11.8	3.5
	1-4인	91,834	11.8	15.5	7.7
	5-9인	9,197	16.9	11.2	10.9
종사규모	10-19인	2,625	18.8	11.8	11.4
	20-49인	1,063	16.3	9.1	12.1
	50인 이상	726	18.7	8.9	12.8
	서울특별시	19,473	10.8	30.0	6.2
	부산광역시	7,321	6.5	6.8	16.2
	대구광역시	5,330	6.5	7.5	12.4
	인천광역시	5,159	9.7	26.7	7.6
	광주광역시	3,054	21.5	9.9	6.1
	대전광역시	3,045	21.9	6.7	5.0
	울산광역시	2,481	5.6	4.0	10.3
	세종특별자치시	450	12.4	4.4	2.0
지역	경기도	25,652	16.0	14.8	9.9
	강원도	4,183	13.9	10.4	7.1
	충청북도	3,391	15.7	7.2	2.7
	충청남도	4,241	11.4	6.4	3.6
	전라북도	3,821	21.2	5.4	5.2
	전라남도	3,674	13.6	3.6	0.9
	경상북도	5,482	7.7	13.8	9.8
	경상남도	6,951	7.3	13.6	8.1
	제주특별자치도	1,737	18.8	13.4	6.8

#### [부록 표-14]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대외 경쟁력강화 방안(계속)

			호비 민		관련		2+1 · 711, 707
	구분	사업체 수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대형화, 전문화	전년 정책부처 지원	산학연 협력강화	기타
전	<sup>년</sup> 체	105,445	27.8	17.0	17.1	2.0	0.4
	스포츠시설업	42,122	30.3	20.1	18.3	2.0	0.6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26.9	14.2	14.0	1.6	0.2
	스포츠서비스업	29,702	25.3	15.8	19.1	2.4	0.3
	개인사업체	91,681	28.4	17.3	16.9	1.9	0.3
조직형태	회사법인	11,256	24.0	15.6	18.4	1.6	0.5
조걱정내	회사이외 법인	1,428	22.9	16.7	22.4	6.6	1.0
	비법인단체	1,080	25.5	11.4	19.2	8.5	1.2
	1-4인	91,834	27.9	17.5	17.1	2.1	0.3
	5-9인	9,197	27.4	14.6	17.9	0.7	0.2
종사규모	10-19인	2,625	25.3	13.7	16.2	1.6	1.2
	20-49인	1,063	27.1	12.6	19.5	2.3	1.0
	50인 이상	726	27.8	11.1	17.8	1.5	1.4
	서울특별시	19,473	22.3	9.3	16.0	5.2	0.2
	부산광역시	7,321	25.5	39.0	4.9	0.9	0.1
	대구광역시	5,330	21.8	42.2	8.4	1.0	0.1
	인천광역시	5,159	28.0	11.9	14.0	1.9	0.2
	광주광역시	3,054	24.0	11.0	22.0	4.3	1.3
	대전광역시	3,045	27.3	6.2	30.6	2.2	0.0
	울산광역시	2,481	23.1	20.1	36.7	0.1	0.1
	세종특별자치시	450	24.4	9.5	45.0	1.0	1.1
지역	경기도	25,652	32.1	13.7	12.6	0.7	0.1
	강원도	4,183	32.5	8.9	24.5	1.0	1.7
	충청북도	3,391	42.3	12.4	17.8	1.7	0.2
	충청남도	4,241	30.4	10.4	34.1	2.2	1.5
	전라북도	3,821	24.7	8.8	32.7	1.6	0.4
	전라남도	3,674	30.1	10.0	39.8	1.8	0.2
	경상북도	5,482	29.3	24.8	13.5	0.3	0.9
	경상남도	6,951	25.8	35.2	8.8	1.1	0.0
	제주특별자치도	1,737	28.6	6.4	20.4	3.1	2.5



	구분	사업체 수	전문인력 부족	사업체 규모 영세성	자금부족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전 체	105,445	10.3	23.4	31.7	6.2
	스포츠시설업	42,122	10.3	22.4	33.8	6.5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7.8	23.6	34.6	6.5
	스포츠서비스업	29,702	13.2	24.8	25.4	5.3
	개인사업체	91,681	9.8	24.1	32.1	5.9
구구들이	회사법인	11,256	12.3	20.2	29.5	8.3
조직형태	회사이외 법인	1,428	22.2	10.6	26.8	7.0
	비법인단체	1,080	16.4	21.9	25.0	6.6
	1-4인	91,834	9.5	24.0	33.1	5.6
	5-9인	9,197	14.9	21.2	22.8	9.4
종사규모	10-19인	2,625	20.0	17.4	24.2	11.4
	20-49인	1,063	16.5	16.3	19.7	10.3
	50인 이상	726	15.5	10.4	13.7	9.3
	서울특별시	19,473	17.2	30.5	22.3	8.8
	부산광역시	7,321	4.6	48.7	31.4	3.7
	대구광역시	5,330	9.5	40.5	30.6	5.5
	인천광역시	5,159	8.6	26.2	26.5	17.3
	광주광역시	3,054	16.2	9.5	21.9	12.5
	대전광역시	3,045	9.2	8.0	26.9	7.2
	울산광역시	2,481	3.8	33.1	19.8	2.6
	세종특별자치시	450	7.0	12.0	34.6	3.9
지역	경기도	25,652	11.3	9.3	47.6	3.8
	강원도	4,183	9.3	21.1	24.4	10.5
	충청북도	3,391	6.4	15.0	29.7	5.8
	충청남도	4,241	12.0	8.1	24.9	2.9
	전라북도	3,821	9.9	8.1	31.0	4.2
	전라남도	3,674	5.4	9.0	27.1	2.0
	경상북도	5,482	6.7	43.1	25.4	3.8
	경상남도	6,951	3.7	38.0	33.5	5.3
	제주특별자치도	1,737	7.8	31.1	26.1	5.2

# [부록 표-15] 2017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산업 육성 발전 장애요인(계속)

	구분	사업체 수	제도 및 규제 과다	외국업체의 시장잠식	정부 지원 미흡	기타
7	<u>.</u> 체	105,445	14.4	2.6	10.6	0.8
	스포츠시설업	42,122	14.5	1.3	10.2	1.0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13.9	5.2	7.9	0.6
	스포츠서비스업	29,702	14.7	1.4	14.5	0.8
	개인사업체	91,681	14.3	2.4	10.7	0.7
조직형태	회사법인	11,256	15.6	4.3	8.7	1.2
소식용내	회사이외 법인	1,428	14.5	0.8	14.5	3.6
	비법인단체	1,080	9.6	1.1	18.2	1.2
	1-4인	91,834	14.0	2.4	10.7	0.7
	5-9인	9,197	17.0	3.3	10.4	1.0
종사규모	10-19인	2,625	13.6	4.5	7.5	1.5
	20-49인	1,063	17.5	5.3	11.4	3.0
	50인 이상	726	25.9	9.4	13.0	2.6
	서울특별시	19,473	11.5	3.0	6.0	0.7
	부산광역시	7,321	3.6	1.6	6.3	0.2
	대구광역시	5,330	6.0	1.7	6.0	0.2
	인천광역시	5,159	14.0	4.5	2.9	0.1
	광주광역시	3,054	15.1	0.9	21.9	2.0
	대전광역시	3,045	24.0	2.8	21.2	0.6
	울산광역시	2,481	8.3	3.2	28.8	0.3
	세종특별자치시	450	16.3	1.3	22.8	2.1
지역	경기도	25,652	20.0	2.3	5.4	0.4
	강원도	4,183	12.0	5.4	13.7	3.5
	충청북도	3,391	26.7	0.9	14.3	1.3
	충청남도	4,241	27.8	1.9	19.7	2.6
	전라북도	3,821	20.5	0.7	23.5	2.0
	전라남도	3,674	22.2	0.7	32.7	0.9
	경상북도	5,482	4.4	3.3	12.6	0.7
	경상남도	6,951	5.6	4.6	9.0	0.3
	제주특별자치도	1,737	10.1	1.9	17.0	0.8

[부록 표-16]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산업 육성 발전 지원 필요 부문

	구분	사업체 수	전문인력 양성지원	자금지원 확대 (융자확대 등)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KISS마크) 활성화 및 국제인증획득 지원
전	<u>.</u> 체	105,445	10.4	52.5	9.7	7.4
	스포츠시설업	42,122	10.2	52.0	9.0	8.5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7.2	53.8	11.7	7.6
	스포츠서비스업	29,702	14.3	51.6	8.5	5.8
	개인사업체	91,681	10.2	52.8	9.7	7.5
조직형태	회사법인	11,256	10.4	52.8	9.6	7.5
_ 10 "	회사이외 법인	1,428	19.2	31.6	10.7	9.5
	비법인단체	1,080	18.9	48.4	8.2	2.3
	1-4인	91,834	9.6	53.5	9.7	7.6
	5-9인	9,197	15.6	48.2	10.2	6.3
종사규모	10-19인	2,625	16.8	43.4	9.7	6.5
	20-49인	1,063	17.9	41.7	7.1	6.8
	50인 이상	726	18.3	26.8	5.2	6.0
	서울특별시	19,473	15.9	34.0	16.7	15.8
	부산광역시	7,321	4.8	72.1	5.5	4.4
	대구광역시	5,330	10.8	64.4	6.4	5.6
	인천광역시	5,159	18.8	29.1	17.2	17.7
	광주광역시	3,054	12.2	56.8	8.5	2.7
	대전광역시	3,045	11.2	63.7	3.3	3.3
	울산광역시	2,481	3.3	62.6	2.2	2.3
	세종특별자치시	450	8.6	77.1	1.6	1.2
지역	경기도	25,652	9.8	49.3	12.6	5.8
	강원도	4,183	9.6	43.5	7.8	9.8
	충청북도	3,391	7.7	51.4	6.5	2.0
	충청남도	4,241	8.8	66.3	2.8	1.6
	전라북도	3,821	5.5	63.8	5.5	2.7
	전라남도	3,674	6.0	70.6	2.7	1.7
	경상북도	5,482	9.3	60.9	6.1	3.7
	경상남도	6,951	5.9	67.1	4.5	6.9
	제주특별자치도	1,737	14.6	49.4	3.7	5.9

# [부록 표-16]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산업 육성 발전 지원 필요 부문(계속)

	구분	사업체 수	스포츠산업 통합정보망 구축	각종 국제 대회 유치(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기타
?	<sup>년</sup> 체	105,445	12.5	4.6	1.3	1.5
	스포츠시설업	42,122	12.7	5.2	0.6	1.8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12.7	3.9	2.0	1.2
	스포츠서비스업	29,702	12.1	4.7	1.4	1.6
	개인사업체	91,681	12.7	4.4	1.1	1.6
조직형태	회사법인	11,256	10.5	6.0	2.3	0.9
고극장네	회사이외 법인	1,428	18.1	5.9	2.8	2.3
	비법인단체	1,080	17.4	3.2	1.0	0.6
	1-4인	91,834	12.7	4.3	1.2	1.5
	5-9인	9,197	10.1	6.5	1.7	1.4
종사규모	10-19인	2,625	13.8	6.1	2.3	1.3
	20-49인	1,063	15.7	6.2	2.8	1.8
	50인 이상	726	20.5	16.4	4.4	2.4
	서울특별시	19,473	8.4	7.2	0.9	1.1
	부산광역시	7,321	10.5	2.5	0.1	0.2
	대구광역시	5,330	9.3	3.2	0.3	0.0
	인천광역시	5,159	11.5	3.4	1.9	0.4
	광주광역시	3,054	7.1	10.4	0.7	1.6
	대전광역시	3,045	9.3	3.9	2.1	3.2
	울산광역시	2,481	23.3	5.6	0.5	0.1
	세종특별자치시	450	2.7	7.2	0.3	1.2
지역	경기도	25,652	17.2	2.9	1.4	1.1
	강원도	4,183	13.2	8.3	3.0	4.7
	충청북도	3,391	22.1	6.0	2.0	2.3
	충청남도	4,241	9.2	4.9	1.8	4.7
	전라북도	3,821	13.1	4.3	0.7	4.3
	전라남도	3,674	8.4	4.0	1.2	5.3
	경상북도	5,482	14.3	2.2	2.9	0.7
	경상남도	6,951	11.0	3.9	0.8	0.0
	제주특별자치도	1,737	11.4	8.0	2.4	4.6



#### [부록 표-17]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매출 증대 방안

_	· 분	사업체 수	전문인력 채용	자체 브랜드 및	(단위 : 개, %) 홍보 및 마케팅
				신규제품 개발	강화
신	<b>체</b> 스포츠시설업	<b>105,445</b> 42,122	<b>10.2</b> 10.7	<b>7.6</b> 5.9	<b>52.6</b> 57.6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4.6	9.5	42.6
日이 네르ㅠ	스포츠서비스업	29,702	15.8	8.0	56.6
	개인사업체	91,681	10.4	7.6	53.2
	회사법인	11,256	6.6	8.8	46.5
조직형태	회사이외 법인	1,428	21.3	4.5	56.0
	비법인단체	1,080	18.3	7.1	54.5
	1-4인	91,834	10.1	7.7	52.4
	5-9인	9,197	10.0	5.6	55.3
종사규모	10-19인	2,625	12.0	11.0	49.3
	20-49인	1,063	13.1	8.8	49.5
	50인 이상	726	11.6	6.9	55.3
	서울특별시	19,473	10.2	14.5	27.4
	부산광역시	7,321	2.9	3.8	69.5
	대구광역시	5,330	7.9	4.0	66.8
	인천광역시	5,159	9.1	19.0	29.5
	광주광역시	3,054	18.6	5.3	45.3
	대전광역시	3,045	9.7	3.3	60.0
	울산광역시	2,481	1.7	6.1	66.1
	세종특별자치시	450	7.8	0.9	78.2
지역	경기도	25,652	14.8	8.1	57.4
	강원도	4,183	9.0	3.4	55.1
	충청북도	3,391	14.3	3.1	59.2
	충청남도	4,241	10.7	2.1	55.7
	전라북도	3,821	10.5	3.3	53.2
	전라남도	3,674	11.6	2.7	57.8
	경상북도	5,482	7.8	8.8	65.9
	경상남도	6,951	3.0	1.3	65.2
	제주특별자치도	1,737	7.5	7.2	58.2

# [부록 표-17]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매출 증대 방안(계속)

구분	4				
	5	사업체 수	내수시장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타
전	체	105,445	24.3	2.2	3.1
	스포츠시설업	42,122	22.0	1.0	2.7
업종 대분류	스포츠용품업	33,621	35.8	3.9	3.6
	스포츠서비스업	29,702	14.6	2.0	3.1
	개인사업체	91,681	23.6	2.1	3.2
조직형태	회사법인	11,256	33.9	2.7	1.6
조식영대	회사이외 법인	1,428	9.3	2.9	5.9
	비법인단체	1,080	7.7	7.0	5.4
	1-4인	91,834	24.3	2.3	3.2
	5-9인	9,197	25.2	1.5	2.2
종사규모	10-19인	2,625	24.5	1.5	1.6
	20-49인	1,063	24.2	2.5	1.8
	50인 이상	726	20.0	3.0	3.1
	서울특별시	19,473	42.3	4.9	0.6
	부산광역시	7,321	23.5	0.2	0.3
	대구광역시	5,330	20.8	0.4	0.1
	인천광역시	5,159	36.0	6.1	0.3
	광주광역시	3,054	17.7	2.7	10.3
	대전광역시	3,045	13.9	1.3	11.8
	울산광역시	2,481	25.1	0.1	0.9
	세종특별자치시	450	7.3	0.6	5.2
지역	경기도	25,652	17.0	2.0	0.7
	강원도	4,183	24.4	1.6	6.5
	충청북도	3,391	17.9	2.2	3.2
	충청남도	4,241	14.3	0.7	16.5
	전라북도	3,821	15.5	2.2	15.5
	전라남도	3,674	16.2	0.6	11.1
	경상북도	5,482	16.2	1.2	0.1
	경상남도	6,951	30.3	0.1	0.1
	제주특별자치도	1,737	18.9	2.1	6.2

# 부록 3

스포츠산업조사 조사표

(m, 21 - 1)
승인협이번호

list ID			
ID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귀 사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에서는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2020년 9월 ~ 11월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제공되며,

귀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내용 및 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는 조사원이 기입하는 란입니다.

★조사원ID	★행정구역 분류부호	★산업분류	★ 사업체 고유번호

이반여항 귀 사업체의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 법인명과 실제 통용명칭이 다를 경	령우, 공식	닉적 명칭을 기자	H한 후 ( )에 실	제 통용명	청을 기입	
11 사업체명 (간판명)			ון מוס	2 대표	자명	2-1	성별
	(	)	사업장 대표자			①남자	②여자
3 소재지	Q 14 (H) 21/E	지번	리	번지	호	통	빈
	읍·면·(법정)동	빌딩	빌딩	동	충	ত	
4 창설연월	※ 현재의 산업활동(업종)을 시작한 서	시기	5				
	— —   H	월	사업자 등록번호	Ш—	Ш	-Ш	Ш





문화체육관광부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 조직형태

6 귀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 회사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법무, 회계법인, 공사, 공단) 등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으로 종교단체, 문화단체, 후원회 등

① 개인사업체(☞문7로 이동)

② 회사법인 ■ 6-1 사업체 구분 ③ 회사이외 법인

\*문6에서 ②회사법인,③회사이외 법인인 경우만 응답해주십시오.

④ 비법인단체(☞문7로 이동)

① 단독사업체

⑤ 국가·지방자치단체(☞문7로 이동)

② 본사·본점

\*문6에서 ②회사법인, 문6-1에서 ①단독사업체,②본사·본점인 경우만 응답해주십시오.

■ 6-2 자본금

(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문7로 이동)

)백만원

#### 종사자수

🚺 2019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종사자 수, 인력충원 현황 및 연간 급여액은 어떻게 됩니까?

※ 2019, 12, 31 기준, 현재 종사자수를 기입(연말기준)해주시고.

단, 계절성을 지닌 사업체(수영장, 스키 등)는 영업기간 중 월평균 종사자 수를 기입해주십시오.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고용계약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 모두 포함)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③ 자영업자 :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경영하는 자(\* 법인사업체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④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

⑤ 기타 종사자 :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 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

(기본급 등 일정급여는 없으며, 만약 일정급여를 지급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성용, 임시 및 일용으로 기입)

⑥ 스포츠산업 종사자 비중 :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스포츠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비중을 아래의 기준과 같이 기업 ※ 영향 업무 : 관리(총무, 인사 등)부서, 유통 및 판매부서 등

비영향 업무 : 건물관리(경비,청소), 사내식당(조리질 근무자, 영양사 등) 등 기타 지원 - 전임 : 스포츠산업 매출만 있는 경우, 모든 영향 업무 수행자 및

스포츠산업&비 스포츠산업 매출 모두 있는 경우, 스포츠산업 매출 관련 영향 업무 전담자

- 겸임 : 스포츠산업&비 스포츠산업 매출 모두 있는 경우, 스포츠산업&비 스포츠산업 매출 관련 영향 업무 겸무자

- 무관 : 스포츠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비영향 업무자

			ž	종사기	<b>작수(</b> '	경)								인력충원		원 현황				
	ו	남		•	স		7	11	연간 급여액 (세전) (백만원)		신	'19년 신규자수 (명)		'20년 신규자수 (명) (계획된 인원 포함)						
합계 (①+②+③+④+⑤)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원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의							
③ 자영업자									급	제 금인	당신 음 :	JPTE 기압	음 <sup>6</sup> 하되	압안						
④ 무급가족 종사자									복리후생비, 퇴직금은 제외											
⑤ 기타종사자									(11)	지급			은 포	<b>望</b>	/					

# 사업실적

▼ 재무제표 작성 여부 \*해당하는 곳에 ✔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작성 ② 미작성

8 2019년 1년 동안 영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문★에서 ① 작성 응답한 경우, 재무제표와 일치하여 기입해주시고,

② 미작성 응답한 경우, 실제 사업실적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입해주십시오.

구분	내용	십 조	조	천 억	백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원
(1) 매출액(수익액)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2019년 1년간 영업활동(제품제조, 상품관매나 용역제공 등) 으로 얻은 수익액								
수출액	- 매출액 중 해외로 수출한 매출액								
(2) 영업비용	<ul> <li>손익계산서의「매출원가」와「판매비와 관리비」를</li> <li>합한 비용</li> </ul>								
가. 매출원가	-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매출원가 비용								
• 제조업(제조원가)	- 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한 손익계산서상 제조원가								
• 도소매업(매출원가)	<ul> <li>상품매입비 등 직접적으로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li> </ul>								
• 서비스업(매출원가)	<ul> <li>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li> </ul>								
나. 판매비와 관리비	- 매출원가를 제외한 인건비, 임차료, 기타영업비용 등								
(3) 영업이익	—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 영업이익 = (1) 매출액 — (2) 영업비용								

8-11 스포츠산업 비중 내수·수출 및 스포츠산업·비스포츠산업 비중을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내수 매출액 비중에서 비 스포츠 산업 비중이 없는 경우, 사선 처리해주시고, 2019년 기준, 비 스포츠 산업 매출액이 "0"인 경우, ② 비 스포츠 산업 란에 "0.0"으로 기업해주시길 바랍니다.

총 매출액 비중	내수 매취	출액 비중	수출 때출액 비중			
(①+②+③+④)	①스포츠산업	②비 스포츠산업	③스포츠산업	④비 스포츠산업		
100.0%						

MEMO

#### 사업체 경영전망

- 🧕 전반적인 국가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직 귀 사업체의 입장에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경영 현황 및 전망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2018년 대비, 2019년 매출액이 5.5% 증가한 경우 +5.5%, 10.0% 감소한 경우 -10.0%로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2019년 대비, 2020년 예상 매출액이 5.5% 증가를 전망한 경우 +5.5%, 10.0% 감소를 전망한 경우 -10.0%로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응답 기준, 전년과 동일하거나 동일할 것이라 전망하는 경우, 0.0%로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2018년 대비) 증감률	2020년(2019년 대비) 증감률 전망				
( )%	( )%				

#### 사업의 종류

100 귀 사업체의 「사업의 종류」를 ①∼③ 에 먼저 ✔로 응답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업하여 주십시오.

※ 사업의 종류는 ①~③ 중 하나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10-1 사업내용		
	무엇을 (제품, 서비스 내용)	누구에게	생산·제공 하였는가	
		예시		
사업의 종류	스포츠의류 (체육복, 등산복)		제조	비고
(중복응답불가)	캠핑용제품 (텐트, 침낭)		제조	·
	당구장·수영장· 골프연습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	
	<i>자전거</i>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태권도를	학생 대상으로	<i>교습</i>	
① 스포츠 시설업 - 스포츠 시설 운영업 - 스포츠시설 건설업				# ####로 이동
② 스포츠 용품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업 및 임대업				<b>☞</b> <b>*****</b> 로 이동
③ 스포츠 서비스업  - 스포츠경기서비스업 (스포츠경기업, 베팅업, 마케팅업)  - 스포츠 정보서비스업(스포츠 미디어업)  - 스포츠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서비스업(게임, 여행업 등)				<b>☞</b> <b>111-3</b> 로 이동

#### 특성항목

- 111 문10에서 응답한 사업의 종류에 맞는 문항을 찾아, 응답해주십시오.
- \*문10에서 ①스포츠 시설업인 경우만 응답해주십시오.

11-1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아용인원(고객) 수 2019년 영업한 개월 수와 연간 이용인원 수를 기업하여 주십시오.

(1) 연간 영업개월 수	( )개월	※ 사업체에서 2019년 중에 정상적으로 영업한 개월 수(파업, 휴업 등은 제외) ※ 한 달간 정상적인 영업일수의 1/2 이상을 영업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
(2) 연간 <b>이용</b> 인원(고객) 수	( )명	※ 2019년 1년간 사업체의 사업시설을 이용한 인원(고객)수를 유료 입장객 또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기입

\*문10에서 ②스포츠 용품업인 경우만 응답해주십시오.

11-2 상품별 구성비 스포츠용품별 내수 및 수입 금액을 기입한 후, 이를 다시 용품별로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 2019년 기준 금액 및 구성비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구성비는 완제품 수입을 기준으로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성비(%)									
<u>스포츠용품</u> 별	금액		합계	<u>스포츠</u> 기구	<u>스포츠</u> 의류	<u>스포츠</u> 신발	공 류	라켓류	기타			
(1) 내수	(	)백만원	100.0									
(2) 수입	(	)백만원	100.0									

- \*문10에서 ③스포츠 서비스업인 경우만 응답해주십시오.
- 11-3 매출액 고객연령별 구성비 매출액을 연령대별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 2019년 기준 금액 및 구성비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 이용금액 지불자가 아닌, 실제 이용고객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출액 비	주	구성비(%)									
(1)+2+3+4+		①7세 이하	②8세~13세	③14세~19세	④20세~39세	⑤40세~59세	⑥60세 이상				
100,0											

М		

#### 석무무항

12 문항별로 가장 주된 것 하나만 ✔표시를 하고, 「기타」인 경우는 (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	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2-1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스포츠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부	문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인력양성 ② 국산제품 품질 제고	
③ 자체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④ 홍보 및 마케팅 전환	
⑤ 대형화·전문화 ⑥ 관련 정책부처 지원	
⑦ 산·학·연 협력강화 ⑧ 기타(	)
12-2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스포츠산업이 육성·발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슨	엇입니까?
① 전문인력부족 ② 사업체 규모 영세성	
③ 자금부족 ④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⑤ 제도 및 규제 과다 ⑥ 외국업체의 시장잠식	
⑦ 정부지원 미흡 ⑧ 기타(	)
12-3 스포츠산업 육성 발전 지원부문 스포츠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이 우셔져이라 피오하
부문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인력 양성지원 ② 자금지원 확대(융자확대 등)	
③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④ 스포츠용품 인증제도(KISS마크) 활성	성화 및 국제인증 획득지원
⑤ 스포츠산업 통합정보망 구축 ⑥ 각종 국제대회 유치(월드컵, 올림픽	등)
⑦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⑧ 기타(	)
12-4 귀사의 스포츠산업 매출증대 방안 귀사의 매출증대 방안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	년입니까?
① 전문인력채용 ② 자체 브랜드 및 신규제품 개발	
③ 홍보 및 마케팅 강화 ④ 내수시장 확대	
⑤ 해외시장 진출 확대 ⑥ 기타(	)
비고	

*휴.폐업 및 매출액 중감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번호	( ) –	(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